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조선전기 貂皮 수요층의 확대와  
밀무역 성행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김 미 형

2016년 2월

# 조선전기 貂皮 수요층의 확대와 밀무역 성행

지도교수 김 동 전

김 미 형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2월

김미형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위 원 \_\_\_\_\_ ㉠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6년 2월

Expansion of Demand for and Prevalence of  
Smuggling of Martin fur  
in the Early Joseon Dynasty

Kim Mi-Hyoung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Je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6. 2.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Abstract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배경	1
2. 연구성과 검토 및 연구방법	3
II. 中央政府의 貂皮 需要와 活用	6
1. 초피의 용도와 기능	6
2. 초피 활용과 제작	11
III. 貂皮 需要層의 擴大와 密貿易	18
1. 초피 생산지와 공급실상	18
2. 수요층 확대와 초피 공급의 한계	26
3. 女眞과의 초피 밀무역	33
IV. 貂皮 密貿易의 弊端과 對策	39
1. 초피 밀무역의 폐단	39
2. 정부의 대응책과 한계	44
V. 결론	54
참고문헌	57

## 표 목차

<표 1> 명나라에 진헌한 초피 수량.....	9
<표 2> 이업 제도(1485년).....	15
<표 3> 15~16세기 초피를 활용한 방한제품.....	16
<표 4> 京工匠 초피 관련 장인 수(1485년).....	17
<표 5> 초피 토공·토산 지역.....	20
<표 6> 초피 가격의 변화(환산한 면포가).....	33
<표 7> 15~16세기 초피공납 감면 사항.....	45
<표 8> 15~16세기 초피복식 착용 금령.....	49

## 그림 목차

<그림 1> 검은담비 사진.....	11
<그림 2> 우암 송시열 초구.....	13
<그림 3> 평안도 초피 토공·토산 지역.....	19
<그림 4> 함경도 초피 토공·토산 지역.....	19

## Abstract

# Expansion of Demand for and Prevalence of Smuggling of Martin fur in the Early Joseon Dynasty

In the Joseon dynasty, marten fur(貂皮) was exclusively used for Royal family as rare fur. That was largely provided for king's use(御用) and also used as material of official uniform(冠服) for only high officials above the 3rd rank *Dangsanggwan*(正3品 堂上官). The central government used marten fur as tribute(朝貢), return gift(回贈) and Royal gift(下賜) to maintain a stable relationship with China and to carry out the function of praise and reward.

Government collected marten fur by imposing a tribute(貢納) in it. This marten fur was a tribute whose quantity had to be stably secured as much as national demand. However, the quantity of marten fur collected in Pyongan province and Hamgyong province fell far short of national demand, and people had to pay tributes in fur acquired through smuggling with Jurchen(女眞) people.

As martin fur clothes were in fashion among women from officials' family and noble women around the late 15th century to the 16th century, its demand started to increase. The reason why the upper class increasingly wore martin fur clothes was mainly due to the increases in the aesthetic value of martin fur and the perception thereof as prestige ornamentation, and the climate of the Little Ice Age of the 16th century. Jurchen people, who

played a role of supplier, could meet the Joseon dynasty's demand for martin fur, and also wealthy merchants(富商大賈), who led barter trade at that time, facilitated the expansion of demand for martin fur through active commercial activities.

The contemporary realities of tributes and expansion of demand facilitated smuggling(密貿易) of martin fur(貂皮) with Jurchen(女眞) people. As a result, the value of martin fur increased so much that horses, cattle or metallic material could be bartered for martin fur.

Jurchen gained economic and military benefits through smuggling of martin fur. In contrast, in Joseon, important resources flowed out, and various evils and vices occurred, which contributed to Jurchen's growth.

Joseon government implemented reduction and exemption policies about tributes in martin fur several times to stamp out smuggling it, or released the decree prohibiting wearing martin fur clothes to prevent the expansion of its demand. Further, Joseon government took responsive measures by strictly implementing the decree prohibiting smuggling of martin fur. This repeated implementation of responsive measures shows that complete prohibition of smuggling martin fur was not actually implemented.

Smuggling of martin fur resulted from the limitation of tribute system and the increase in domestic demand for martin fur. Meanwhile, although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policy of encouraging agriculture and suppressing commerce(務本抑末策)' and controlled commerce, smuggling of martin fur triggered promotion of product distribution. Merchants' commercial activities show a socioeconomic change that distribution channels for martin fur was expanding into private trading area at that time. These facts formed the background of Uniform Land Tax Law (*Daedongbeop*)(大同法), accelerated commercial development in the late years of the Joseon dynasty, and maybe laid the groundwork for distribution economy.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배경

복식에는 시대에 따른 사회문화상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다. 유교적 이념 아래 엄격한 신분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조선시대에도 복식은 곧 신분의 상징이었다. 신분에 따라 지켜져야 할 복식제도가 있었고, 사용할 수 있는 衣料에도 제약이 따랐다.

여러 의류 중에서 皮物은 고대부터 사용했으며 보은 목적뿐만 아니라 장식이나 계급의 지표, 외교적 무역수단이었다. 주변에서 쉽게 사냥할 수 있는 동물의 피물보다는 사냥하기가 어려운 피물일수록 귀했고, 가공기술의 제약도 따랐다.

조선시대에 담비<sup>1)</sup> 가죽은 여러 피물 중에서도 귀하게 인식했다.<sup>2)</sup> 문헌 기록상에 貂皮·獬皮<sup>3)</sup>·獬鼠皮·貂鼠皮<sup>4)</sup> 등으로 나타난다. 『經國大典』의 禮典 儀章 조항을 보면 계급에 따라 착용하는 복장과 그에 따른 재료가 기록되어 있다. 담비가죽은 정3품 당상관까지만 착용이 가능했고,<sup>5)</sup> 刑典 禁制 조항에도 함부로 매매할 수

1) 한자로 貂·鼯이다(민중서림편집부, 『漢韓大字典』 제3판, 2013, 2180쪽, 2717쪽).

2) 『世宗實錄』 卷38, 世宗 9年 10月 19日. 「…仍問前朝之時 貂皮貴賤 判府事崔閔德對曰 前朝貂皮極貴」.

3) 獬는 돈피 돈으로 담비의 모피 貂皮라고 하고 있다(민중서림편집부, 앞의 책, 민중서림, 2013, 1405쪽); 『雅言覺非』 권3 「獬以代貂」(『雅言覺非』 기록에도 獬을 貂자로 대신하고 있다(丁若鏞原著·金鍾權 譯註, 『雅言覺非』, 일지사, 1976)).

4) (翻譯)『老乞大』에서 貂鼠皮를 돈피로 연해하고 있다. 쥐 가죽의 한 종류가 아니라 담비가죽임을 알 수 있다((翻譯)『老乞大』下 51면 뒤. 「頭上戴的好貂鼠皮披肩 머리에 쓴 거슨 도흔 돈피 슄업이오」 下 52면 뒤. 「又有貂鼠皮狐帽 또 돈피털 간과이」); 『老乞大』는 고려 후기에 편찬된 것으로 전해지며 조선시대 사역원의 漢語 교육 교재였다. 고려 상인이 중국 여행길에서, 중국 상인들과 교역할 때 벌어지는 내용이 실려 있다. 『老乞大』를 16세기 초에 역관 최세진이 처음으로 번역하여 (翻譯)『老乞大』를 편찬했고 漢語와 國語로 기록되어 있어 복식연구에 있어서도 당시 사용했던 복식 명칭, 직물명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이다(서정원, 『『老乞大』 刊本들을 통해 본 14~18세기의 복식관련 용어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2쪽).

5) 『經國大典』 禮典 儀章 冠. 「一品…常服 紗帽 貫子笠纓用金玉 笠飾用銀 大君用金 耳掩用段貂皮 二品…常服 紗帽 貫子笠纓用金玉 笠飾用銀 耳掩用段貂皮 三品…常服 紗帽 堂上官貫子笠纓用金玉 笠飾用銀 耳掩堂上官用段貂皮 其餘三品以下至九品用綃鼠皮」.

없는 禁物이었다.<sup>6)</sup> 중앙정부에서는 담비가죽을 왕이 신하에게 수여하는 下賜品, 중국 사신에게 준 回贈品, 朝貢品에 포함되었던 別進獻의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왕실의 방한제품 제작에도 활용했다.

담비가죽은 정부에서 공납으로 조달했으며 국용의 수요량만큼 안정적인 확보가 요구되는 공물이었다. 하지만 평안·함경도지역의 담비가죽 공납은 결코 순조롭지 못했고, 백성들은 담비가죽 물량을 충당하고자 여진과 밀무역을 하여 납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한편,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에 이르면 상류층에서 담비가죽 복식착용이 성행하였고 수요층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담비가죽의 수요가 증가하자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북방 경계지역에서 여진과 밀무역을 하였다. 그 거래 조건에서 牛馬·鐵物이 요구될 정도로 초피 가격은 상승했다.

여진과의 담비가죽 밀무역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정부는 평안·함경도지역의 담비가죽 공납을 감면하거나 담비가죽 복식착용 금령 및 밀무역을 금지하는 대응책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담비가죽 복식을 착용할 수 있는 신분은 한정되어 있었고, 담비가죽 복식착용의 확대는 신분질서의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와 더불어 『經國大典』의 刑典 禁制 조항에 우마·철물 역시 함부로 매매할 수 없는 규정이<sup>7)</sup>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비가죽 수요증가로 인해 우마·철물이 여진에게 지속적으로 유출되었다. 이는 농업을 장려하고 항시 備邊을 위한 軍資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했던 정부의 고민과 직결되었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조선전기 중앙정부에서 사용했던 여러 피물 중에 고급 모피로써 사회적 문제가 컸으며 禁制의 대상이었던 담비가죽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담비가죽을 대부분 방한용품의 재료로써만 연구했던 기존의 연구에서 더 확장시켜 담비가죽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와 영향을 검토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6) 『經國大典』 刑典 禁制. 「潛賣禁物者 闊細布綵紋席厚紙貂皮土豹皮海獺皮之類 兩界浦所及客館賣者亦禁下同 杖一百徒三年」.

7) 『經國大典』 刑典 禁制. 「潛賣禁物者…兩界浦所及客館賣者亦禁下同…重者 鐵物牛馬金銀珠玉寶石焰燄軍器之類 絞」.

## 2. 연구성과 검토 연구방법

담비가죽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복식사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정복희·박춘순의 연구가 있는데,<sup>8)</sup> 조선시대가 아닌 중국의 上古시대부터 淸나라 말기까지를 대상으로 담비가죽 복식과 청대의 동북소수민족의 담비가죽 공급 상황을 고찰했다. 그 외의 연구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보면 첫째, 복식사 전체를 다루면서 의복의 재료로써 피물을 일부 설명하여 포함된 연구와<sup>9)</sup> 둘째, 피물만을 중심으로 하여 포함된 연구이다.<sup>10)</sup> 이 연구들은 한국 복식사에서 광범위한 피물들에 관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넓은 범주 안에서 담비가죽을 일부 설명하고 있어 전문 연구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모피와 피혁 복식에 관한 연구와 관련용어를 다룬 부분에 포함된 연구이다.<sup>11)</sup> 방한 복식들을 종류별로 정리했으며, 사료들을 분석하여 모피와 피혁 복식의 명칭을 검토했다. 하지만 담비가죽 복식은 부분적 연구에 그쳤다.

넷째, 복식 禁制에 포함된 연구이다.<sup>12)</sup> 조선시대 복식에서 신분에 따라 제약이 있었던 衣料 중에 담비가죽을 일부 포함하여 정리했으나 기존의 복식사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안보연과 최경순은<sup>13)</sup> 모피사치 금제에 대

8) 정복희·박춘순, 「貂皮考」, 『복식』 제42호, 한국복식학회, 1999.

9)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7.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일지사, 1988.

10) 박순지, 『韓國의 毛織物과 皮物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민길자, 「朝鮮時代의 皮, 毛物에 대한 研究」, 『교육논총』 제11권,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1992.

11) 정복남, 『裘에 關한 研究-우리나라와 中國을 中心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서정원, 「『老乞大』 간본들을 통해 본 14~18세기 복식관련 용어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안보연, 「우리나라 모피 피혁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성희, 「조선시대 방한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강순제·김은정, 「문헌을 통해 본 조선시대 방한모 명칭에 관한 연구」, 『복식』 제58권 7호, 한국복식학회, 2008.

12) 김동욱, 「李朝 初의 服飾 禁制」, 『논문집』 제7권 1호, 중앙대학교, 1962.

이선재, 「朝鮮時代 服飾禁制의 動因과 樣相에 關한 研究」, 『논문집』 제30권, 숙명여자대학교, 1990.

박경자,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成宗代에서 顯宗代의 복식금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3) 최경순, 「朝鮮朝 毛皮 奢侈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16권 1호, 경일대학교, 1999.

해서 언급은 했으나 사료들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당시 시대 배경이나 역사성의 파악은 부족한 편이다.

역사학계에서도 담비가죽을 연구한 논문이 있지만 아직 소수이다. 경제부분에서 조선전기 미곡 이외의 상품 속에 일부 포함하여 물가변동에 대해 고찰한 연구가 있다.<sup>14)</sup> 피물에 속해 담비가죽의 물가변동에 대해서 언급했으나 일부가 豹皮와 담비가죽을 혼동한 물가를 제시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對女眞관계에서 함경도 六鎭지역의 여진인과 조선인들에 대한 연구 속에 담비가죽 공납을 설명한 연구도 있다.<sup>15)</sup> 담비가죽 공납에 대한 실상을 연구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六鎭지역에 한해서만 연구를 했다.

여진족의 성장을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여진의 多元的 경제구조 속에서 담비가죽 교역을 통해 여진사회의 발전을 주목한 연구가 있다.<sup>16)</sup> 담비가죽 교역을 중심으로 서술했기 보다는 수렵·농경·무역·약탈로 형성되는 여진족 경제구조의 큰 틀 속에 여진과 조선의 담비가죽 교역을 일부 설명했다.

또한 여진과의 교역분야에서 모피교역을 주목한 연구가 있다.<sup>17)</sup> 여진이 담비가죽 교역으로 인해 조선에 대한 來朝양상의 변화가 생겼음을 연구한 점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모피교역 관점에서 對女眞관계를 주목하여 연구했기에 조선사회 속에서 담비가죽을 어떠한 용도와 제품으로 활용했는지, 담비가죽 사치풍조의 성행으로 수요층의 확대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또한 정부에서 담비가죽 교역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했던 방안에 대한 연구는 진전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담비가죽을 조선후기 對日관계 속 피물에 포함하여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 속에서 피물이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에 관한 연구가 있다.<sup>18)</sup>

위와 같이 지금까지의 피물에 대한 연구는 방한복식이나 그 재료로써의 특징

14) 이정수, 「조선전기의 물가변동-미곡 이외의 상품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제68집, 국사편찬위원회, 1996.

15) 한성주, 「조선의 대여진관계와 6진지역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 제49집, 한일관계사학회, 2014.

16) 남의현, 「多元的 經濟構造를 통해 본 女眞社會의 特徵-15~17세기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 35권, 2012.

김윤순, 「14~17세기 女眞經濟의 구조와 後金の 건국」,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17) 김순남, 「16세기 조선과 野人사이의 모피 교역 전개」, 『한국사연구』 제152권, 한국사연구회, 2011.

18) 하정미, 「조선후기 대일관계 속의 皮物」,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담비가죽의 용도와 가죽을 활용한 제품들에 대한 연구도 아직은 미흡하다. 담비가죽 공납에 대한 부분과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담비가죽 수요층이 확대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한 접근도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조선에서의 담비가죽 밀무역을 對女眞관계에서 교역의 관점으로만 보거나, 부분적으로 언급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밀무역 성행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했던 조선정부의 노력에 대한 연구도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 유의하면서 조선전기 담비가죽을 활용한 사례를 문헌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담비가죽 공납실상과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과 연관 지어 수요층의 확대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분석해보겠다. 그리고 공납실상과 수요층 확대로 공급의 한계가 발생하여 밀무역이 성행했던 상황도 검토하겠다. 더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한계를 파악해보겠다.

이를 위해서 우선 II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의 담비가죽 수요와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 담비가죽을 어떠한 용도와 방한제품으로 활용했는지 『朝鮮王朝實錄』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왕실에서 담비가죽제품 제작을 담당했을 장인과 담당부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바탕으로 담비가죽의 산지와 공납실상에 대해 분석하겠다.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수요층이 확대될 수 있었던 요인과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담비가죽 수요증가의 결과가 공급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공납실상과 수요층 확대로 인해 발생한 여진과의 담비가죽 밀무역도 살펴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III장의 논지를 바탕으로 여진과 담비가죽 밀무역이 성행하면서 발생한 폐단과 정부의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히 방한제품의 재료로만 생각했던 담비가죽이 전반적으로 조선사회에 끼쳤던 영향을 밝히는데 논지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논지의 통일성을 위해 담비가죽을 貂皮로 통칭하겠다.

## II. 中央政府의 貂皮 需要와 活用

### 1. 초피의 용도와 기능

중앙정부에서 초피를 사용했던 용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왕이 중국 사신에게 의례적 답례로 또는 선물로 준 회증품, 중국에 보내는 조공품으로써 별진 헌품, 신하에게 내린 하사품에 사용됐다.

국초 조선은 對明事大政策을 표방했으며 明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무역체제에 부흥하였다. 당시 조선이 견지하던 사대교린 노선과 일치하고<sup>19)</sup> 경제 문화적 실리를 위한 목적이기도 했다. 조선 정부가 명에 대한 사대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몇 차례의 정기 및 임시 使行을 보내고, 명에서는 수시로 사절을 파견했었다.<sup>20)</sup> 초피는 그 과정 속에 사용된 외교적 기능을 수행했던 수단 중 하나였다. 먼저 중국 사신에게 회증품으로 초피를 주었던 기록들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內史에게 良馬 1필 苧麻布 50필을 주고 또 貂裘·毛冠·靴 각 하나씩, 인삼 30근 花席 12장을 주고, 頭目 공봉 등 5인에게 각 苧麻布 4필을 주고, 그 이하는 차등 있게 주었으며 또 襦袂衣 1습을 주었다. 靜妃殿에서 저마포 15필을 주고 세자가 저마포 6필을 주었다.<sup>21)</sup>

② 知申事 조서로를 보내어 두 사신에게 貂裘·貂冠 각 하나씩, 貂皮 각 50령 土

19) 구도영, 「조선초기 對明貿易體制의 성립과 운영」, 『史學研究』 제109호, 한국사학회, 2013, 93쪽.

20) 원유한, 「무역」, 『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2003, 196~197쪽.

21) 『太宗實錄』 卷22, 太宗 11年 9月 1日. 「贈內史良馬一匹 苧麻布五十四 又贈貂裘毛冠靴各一人 蔘三十觔 花席十二張 贈頭目公奉等五人 各苧麻布四匹 其下有差 又以襦袂衣一襲贈之 靜妃殿所贈苧麻布十五匹 世子所贈苧麻布六匹」.

豹皮 각 1령을 주었다.<sup>22)</sup>

③ 좌부승지 한계미를 의주에 보내 명하기를, 貂裘 2벌 毛冠·耳掩 각 2개 油茺 4부 蓑衣 2벌 寢席 4장 黑斜皮鞋 2사를 陳鑑등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 또 頭目들에게도 麻布를 각 1필을 주게 하였다.<sup>23)</sup>

④ 임금이 留都承旨 이극증에게 명하여, 중국 사신에게 黑麻布 15필 白苧布 15필 黑麻布圓領 1령 白苧布帖裏 1령 鴉青四段貂裘 1령 鴉青四段貂皮耳掩 1개 貂皮冠 1개 大紅四段內貂皮護膝 1개 白鹿皮內貂皮靴涼精黑斜皮套鞋具 1개를 주고, 頭目에게 각 鴉青綃鼠皮冠 1개 鴉青綃鼠皮耳掩 1개 柳青紬袂帖裏 1령 白苧布 2필 黑麻布 2필을 주게 하였다.<sup>24)</sup>

앞의 사료 ①·②를 보면 사신에게는 초피복식 또는 초피로 회증했다. 또한 계급에 따라 차등 있게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③·④에서는 사신에게 초피복식을 주었고 그 이하 따라온 頭目들은 대상에서 제외였다. 즉 서열에 따라 대접한 복식의 재료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회증했던 시기가 사료 상에 6·7월에도 있었음을 볼 때 계절에 상관없이 초피복식이나 초피를 주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초피가 복식재료로 선호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 사신들은 초구나 초피를 귀하게 여겨 받는 것을 좋아했으며<sup>25)</sup> 요청을 하기도 했다.<sup>26)</sup> 사신들에게는 의례적으로 회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선물로 주기도 했다.<sup>27)</sup> 세종대에 금·은 조공의 면제를 위해서 사

22) 『世宗實錄』 卷20, 世宗 5年 4月 18日. 「遣知申事趙瑞老 贈兩使臣貂裘貂冠各一 貂皮各五十領 土豹皮各一領」.

23) 『世祖實錄』 卷8, 世祖 3年 6月 15日. 「遣左副承旨韓繼美于義州 命以貂裘二 毛冠耳掩各二 油茺四部 蓑衣二 寢席四張 黑斜皮鞋二事分贈鑑等 又贈頭目麻布各一匹」.

24) 『成宗實錄』 卷6, 成宗 1年 7月 16日. 「上命留都承旨李克增 贈天使 黑麻布十五匹 白苧布十五匹 黑麻布圓領一領 白苧布帖裏一領 鴉青四段貂裘一領 鴉青四段貂皮耳掩一 貂皮冠一 大紅四段內貂皮護膝一 白鹿皮內貂皮靴涼精黑斜皮套鞋具一 頭目 各鴉青綃鼠皮冠一 鴉青綃鼠皮耳掩一 柳青紬袂帖裏一領 白苧布二匹 黑麻布二匹」.

25) 『世宗實錄』 卷50, 世宗 12年 10月 23日. 「土豹貂皮 中國之人以爲至寶」; 『世宗實錄』 卷21, 世宗 5年 8月 23日. 「遣元閔生 別贈海壽貂裘 海壽受而卽着 喜形於色曰 旣受厚慰 又蒙別惠 感極難量」.

26) 『太宗實錄』 卷34, 太宗 17年 7月 30日. 「贈貂皮百領于黃儼 又贈金耳環及貝珠一雙 又遣內官朴興福 贈狗子各一於兩使臣 世子亦贈狗子一於黃儼 二於海壽 皆從其求也 世子贈苧麻布各五匹 三大君苧麻布各四匹于黃儼」; 『世宗實錄』 卷29, 世宗 7年 閏7月 21日. 「齊賢劉浩求貂裘 石燈臺」.

27) 『成宗實錄』 卷120, 成宗 11年 8月 5日. 「上乃出命留承旨邊脩 贈人情雜物 兩使處…鴉青四段貂皮虛胸一 鴉青四段貂皮耳掩一」.

신에게 초구나 많은 양의 초피를 회증했었다.<sup>28)</sup>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초피나 초구를 회증하면서 對明관계에서 안정적인 외교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중국에 조공품으로 보내는 예물이나, 전례의 方物이외에 별도로 보내는 진헌품목으로도 사용했다. 정기사행에 따르는 조공품 이외에도 수시로 파견되는 私恩·進賀·奏請使 등 각종 임시 사행시에도 의례적 예물로서 여러 가지 물품을 명나라에 보냈다.<sup>29)</sup>

세종 1년(1419)에 사은사를 통해서 초피 4백장을 보냈고, 세종 9년(1427) 세자가 황제 조현 시 방물이외에 초피 5백령을 보냈다.<sup>30)</sup> 성종 9년(1478)에는 황제가 토산물을 요구하는 물목에 포함되어 이후 성종 11년(1480) 5월 1백장, 동년 7월 2백장, 동년 8월 3백장 세 차례 진헌하였다.<sup>31)</sup>

성종 12년(1481)에는 聖節때마다 별도로 바치는 진헌품목에 초서피 5백장을 바치라는 勅書가 내려져서 해마다 초피를 진헌해야 했다.<sup>32)</sup> 그 후 성종 13년(1482) 특별히 중국에 진헌하는 초피의 수를 줄이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의논하였지만 수에 준하여 바치고, 성종 14년(1483) 8월 초피 5백장, 동년 9월 초피 5백장을 진헌했다.<sup>33)</sup> 이처럼 상당량이 진헌되었지만 당시 조선은 초피공납 문제로 초피조달의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매해 조공을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다. 초피 포획의 어려움 때문에 매년 상공을 숫자대로 관비해 바치기가 어렵고, 계속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면공의 방안을 강구할 정도였다.<sup>34)</sup>

28) 『世宗實錄』 卷7, 世宗 2年 1月 25日. 「贈黃儼交綺麻布四匹 細紬六匹 鉗鐵帶一腰 貂裘一領 仍乞免金銀貢」; 『世宗實錄』 卷63, 世宗 16年 2月 26日. 「前此本朝奏朝廷 冀免金銀貢之時 鳳曰 殿下所贈毛衣 皆見奪於執事 更望殿下之恩 肆予將土豹皮五領 貂皮百領以贈」.

29) 원유한, 앞의 책, 2003, 197쪽.

30) 『世宗實錄』 卷5, 世宗 1年 8月 25日. 「方物表曰…貂鼠皮四百領…」; 『世宗實錄』 卷37, 世宗 9年 7月 25日. 「帝所禮物 於年例方物外…貂皮五百領…」.

31) 『成宗實錄』 卷99, 成宗 9年 12月 21日. 「韓致亨齋來皇帝求索物目…貂鼠皮…」; 『成宗實錄』 卷117, 成宗 11年 5月 8日. 「別進獻物目…貂鼠皮一百張…」; 『成宗實錄』 卷119, 成宗 11年 7月 22日. 「遣禮曹判書李承召 右副承旨成倪于太平館 封進獻物件 兩使親自計點其物件…貂鼠皮二百張…」; 『成宗實錄』 卷120, 成宗 11年 8月 19日. 「其齋去別進獻物目…貂鼠皮三百張…」.

32) 『成宗實錄』 卷136, 成宗 12年 12月 22日. 「王國中所製所產器物可進御者 著爲例 每歲貢獻于庭用表王事上至意…貂鼠皮五百張…」.

33) 『成宗實錄』 卷144, 成宗 13年 8月 24日. 「命領敦寧以上 議別進獻象牙 土豹皮 貂皮減數便否…今次依數進獻 後則或準或減 不定其數何如 從之」; 『成宗實錄』 卷157, 成宗 14年 8月 18일. 「遣同知中樞府事韓儼 奉表如京師 賀聖節 百官拜表如儀 別進獻物件…貂鼠皮五百張…」; 『成宗實錄』 卷158, 成宗 14年 9月 16日. 「命都承旨李世佐 齋進獻雜物 詣太平館 上使以病不出 副使與世佐及館伴盧思慎 許琮共坐封裹…貂鼠皮五百張…」.



결국 성종 15년(1484)에는 장만하기 어려운 물건은 수량을 줄이고 장만하기 쉬운 물건의 수량을 더해서 초피 1백장을 진헌하고 외교적 절충 끝에 면공되었다.<sup>35)</sup> 이후로는 조공품목에 포함시켜 보냈던 기록이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의 진헌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명나라에 진헌한 초피 수량<sup>36)</sup>

시기	내용	수량
세종 1년(1419) 8월 25일	사은	4백장
9년(1427) 7월 25일	별진헌	5백장
성종 11년(1480) 5월 8일	"	1백장
" 7월 22일	"	2백장
" 8월 19일	"	3백장
13년(1482) 8월 24일	"	5백장
14년(1483) 8월 18일	"	5백장
" 9월 16일	"	5백장
15년(1484) 8월 24일	"	1백장

<표 1>에 따른 조선 초기 약 60여 년간의 진헌수량이 총 3천1백장으로 볼 때, 이를 마련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었을 것이다. 때문에 조선은 성종 13년(1482)에 초피의 진헌 면공 방안을 강구했다.

다음으로는 초피를 왕이 신하에게 수여한 하사품으로 사용된 사례이다. 보통은 중국에 사행으로 가는 자에게, 변방에 위임된 자에게 위무차원으로, 공을 세웠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게, 시험 후 상을 수여하는 등에 사용했다.

34) 『成宗實錄』 卷145, 成宗 13年 閏8月 3日. 「且土豹皮 貂鼠皮 雖產於本國 亦難捕得 每年常貢 難可準數」; 『成宗實錄』 卷157, 成宗 14年 8月 27日. 「上又酬之 語副使曰 近年我小邦所奏大事 皆得蒙准 皇恩說不能盡 凡朝廷所命方物 有何不進 但金銀 土豹皮 貂皮 皆非本國所產 銀則時有欽賜 容可做進 土豹皮 貂皮 皆出於野人之地 若使連年進貢 則將難繼進 朝廷責之 將何以應之 請大人留神 朝廷若有問焉 善辭奏達 使之獲免」.

35) 『成宗實錄』 卷168, 成宗 15年 7月 9日. 「傳曰 大抵人情加則喜 減則怒 今雖加進 有何後弊乎 予意以爲 今成單本二件 一書加數物目 一書減數物目 語谷清曰 我國難備之物 鄭金兩太監備嘗知之 而大人亦知之矣 難備之物 不得已減數 故易備之物 加數而來 谷清若云 加數無妨 則以加數單本進獻 可也 若曰不可 則進減數單本可也」; 『成宗實錄』 卷169, 成宗 15年 8月 24日. 「聖節使齋去別獻物目…貂鼠皮一百張…」; 『成宗實錄』 卷173, 成宗 15年 12月 4日. 「聖旨曰 說與朝鮮國差來陪臣韓致亨等知道 回還傳與國王 內進方物 不係本國所出 艱於措置者罷 但係本國所產所製 不拘前數 任意造辦來貢」.

36)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⑤ 貂皮裘 1령을 知申事 조말생에게 주었으니 직사에 恪謹한 때문이었다.<sup>37)</sup>

⑥ 함길도 도절제사 광연성에게 諭示하기를, 경이 멀리 邊鎭에서 수고하니 괴로움이 심할 것이다. 변방의 혹한을 생각하여 잔치를 내려 이를 위로하고, 인하여 貂裘를 하사하니 경은 받아 주기를 바란다.<sup>38)</sup>

⑦ 이조판서 한명회와 예조참판 구치관을 명나라에 보내어서 세자를 封하여 줄 것을 청하고...한명회 구치관이 장차 떠나려 하는데 임금이 鞍馬·弓矢·貂裘·貂冠등을 하사하니 무릇 몸에 따른 衣仗이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다.<sup>39)</sup>

⑧ 政院에 전교하였다. 근래 흉년이 들어서 功臣의 仲朔宴과 恩數를 오래 폐지하여 왔으니, 공신과 蔭功臣으로서 중삭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酒饌과 貂皮등의 물건을 차등을 두어서 내려라 하고, 이어 三公 및 府院君·經筵官들에게 貂皮·衣服·靴·帶를 차등을 두어서 내렸다.<sup>40)</sup>

앞의 사료에서 하사된 것들은 초피복식이나 초피였다. 사료 ⑤·⑥은 직무에 성실했거나 변방에서 추위와 수고스러움을 염려하여 방한복으로 초구를 하사했고, 왕이 입었던 초구를 하사했던 경우도 있었다.<sup>41)</sup> 사료 ⑦은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신하에게 하사한 기록이며, 사료 ⑧은 차등을 두어 공신에게 하사했다. 다른 기록에서도 여러 종류의 초피 복식을 하사했으며 차등을 두어 하사했음 알 수 있다.<sup>42)</sup>

신하로서의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공을 세웠거나 또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포상의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하사품은 임무의 중요도

37) 『太宗實錄』 卷32, 太宗 16年 11月 30日. 「賜貂皮裘一領于知申事趙末生 以其恪謹職事也」.

38) 『世祖實錄』 卷9, 世祖 3年 9月 11日. 「諭咸吉道都節制使郭連城曰 卿遠勞鎭邊苦甚 想塞上寒酷 賜宴慰之 仍賜貂裘 卿可領受」.

39) 『世祖實錄』 卷10, 世祖 3年 11月 10日. 「遣吏曹判書韓明澮 禮曹參判具致寬 如大明 請封世子… 明澮致寬之將行也 上賜鞍馬弓矢貂裘貂冠 凡隨身衣仗 無一不備」.

40) 『中宗實錄』 卷29, 中宗 12年 9月 21日. 「傳于政院曰 近來因歲凶歉 久廢功臣仲朔宴及恩數 其特賜諸功臣及蔭功臣應參仲朔宴者 酒饌及貂皮等物有差 因賜三公及府院君 經筵官等貂皮衣服靴帶有差」.

41) 『宣祖實錄』 卷17, 宣祖 16年 9月 24日. 「日今天時已寒 邊土慘裂 茲解所御貂裘一領以賜 卿其領之」.

42) 『成宗實錄』 卷1, 成宗 卽位年 12月 2日. 「賜請承襲使權域 黑氈笠沈束香纓子具一 鴉青匹段貂皮耳掩一 鴉青匹段貂皮耳掩并毛冠一 貂鼠皮毛冠一 鴉青匹段袂圓領一 貂皮匹段虛胸一…貂皮二十張 無心筆一百柄 油烟墨十笏 告訃請諡使宋文琳 亦賜之有差」.

나 대상의 직책에 따라 수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공무에 종사하였던 관리들에게 하사품으로 내려진 것은 다양하였지만, 그중에서도 초피나 초구를 활용하였다는 점은 당시 사회에서 가족의 효용가치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에 따른 복식 가공기술도 상당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초피 활용과 제작



<그림 1> 검은담비 사진<sup>44)</sup>

초피가 피물이었음 볼 때, 대부분 방한복식이나 방한용품으로 왕실의 御用이거나 冠服의 재료로 활용되었다.<sup>43)</sup> 다른 동물에 비해 담비의 모피는 길고 매우 부드러워 아름다웠으며 가죽도 가벼웠다. 또한 방한효과도 뛰어나 매서운 추위에도 손색 없었던 특징이 있었다. 특히 검은담비의 모피는 여름에는 검은색 겨울에

는 옅은 갈색을 띠며, 검은색 모피는 최고급품이었다.<sup>45)</sup>

조선전기 초피를 활용한 제품에 관한 복식이나 회화자료, 전래되는 유물이 거의 없어 정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는 있다. 하지만 왕실에서 초피를 이용하여 어떠한 제품을 제작해서 활용했는지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衣服·冠帽·靴·장신구 및 기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 의복과 관모를 중심으로 복식구성과 사용방식 등을 파악해 보겠다.

43) 『成宗實錄』卷52, 成宗 6年 2月 2日. 「且尙衣院貂皮 積藏歲久 或色變 或蠹敗 不合御用」; 『中宗實錄』卷94, 中宗 35年 11月 3日. 「此貂皮四十張 權宜量減 安集流民 以實邊圉 以爲邦國永保之計 似爲可當 而非徒不少 冠服用 定爲常貢」.

44) [www.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두산백과를 참고했다.

45) 주신·고춘명, 『중국의관복식대사전』, 상해사서출판사, 1996, 538쪽; 담비는 식육목 족제비과에 속하며 전 세계에 7종이 있다. 주로 유럽·북아메리카·중앙아시아·시베리아·동북아시아에 걸쳐 살아간다(우동걸, 『한반도 산림에 서식하는 담비의 생태특성과 보전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4쪽). 검은담비는 북한의 양강도 백암군·보천군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www.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두산백과).

1) 衣服

의복에는 貂裘·貂皮虛胸·貂皮護膝·貂皮襖子·貂皮短襖子·貂皮帖裏·裙이 있었다. 貂裘는 초피로 만든 가죽옷으로 정3품 당상관인 집현전 부제학 이상만 착용할 수 있었다.<sup>46)</sup> 선행연구에 따르면裘의 형태는 다양했으며<sup>47)</sup> 앞서 설명한 초피허흉·초피호슬·초피단오자·초피철릭은 넓은 의미로 초구에 속하는 의복이다.

초구는 중국의 秦漢시대부터 매우 유명하고 귀중했다. 이는 담비가 작아서 여러 마리를 합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다.<sup>48)</sup> 조선후기 기록에서도 초구 한 벌을 만드는데 초피 60장 정도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면<sup>49)</sup> 많은 양의 초피가 필요했으며 그만큼 귀했던 의복이었다. 세조는 영의정 정인지에게 본인이 착용했던 초구를 하사하면서 매우 가볍고 편안하다고 했다.<sup>50)</sup> 이는 초구가 방한복으로 뛰어난 특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사신 황엄이 초피를 안으로 대어 옷을 제작해 주길 청했던 기록과<sup>51)</sup> 비

46) 『世宗實錄』 卷88, 世宗 22年 1月 25日. 「自今貂裘及土豹裘 自集賢殿副提學以上穿着 三品以下只許狸狐鼠皮」.

47) 조선후기의 기록이지만 서유구의 『林園十六志』에서는 우리나라의裘는 길이가 긴 것, 짧은 것, 큰 것, 작은 것 한가지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古之裘制 長與衣齊 我東則 長短大小不一』(徐有榘 纂, 『林園十六志』 第2卷, 膽用志 卷3, 서울대학교고전간행회, 1967)). 김동욱도 5가지로 분류했으며(김동욱,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史, 1973, 406~407쪽). 정복남은 서유구와 김동욱의 분류를 토대로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나는裘의 종류를 남자, 여자 복식으로 나누어 분류했다(정복남, 『裘에 關한 研究 우리나라와 中國을 中心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86쪽).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裘	서유구	① 「周身環掩如今周衣 俗呼두루마기」 ② 「半臂方領兩襟對下長僅護腹如今褙子」 ③ 「長及踝脛而前後不相連屬如今俗所謂冬衣 冬옷」 ④ 「有如今裏衣 俗呼저고리」
	김동욱	① 갓두루마기 ② 갓저고리 ③ 모피를 안에 댄 배자 ④ 모피를 안에 댄 마고자 ⑤ 천으로 만들어 내의로 입게 되면서 甲衣의 형태와 유사하게 되어 전포로 전용된 裘衣
	정복남	남 갓두루마기, 초서피오자, 초피허흉, 초피단오자, 軍袍로 전용 한裘, 마고자 여 갓저고리, 배자

48) 王維堤, 『중국의 옷 문화』, 에디터출판사, 2005, 297쪽.

49) 徐有榘 纂, 『林園十六志』 第2卷 膽用志 卷3, 서울대학교고전간행회, 1967, 一貂之皮方益尺積六十餘紹僅成」.

50) 『世祖實錄』 卷5, 世祖 2年 8月 30日. 「上曰 然則當與我偕行 賜貂裘一領曰 予所嘗御 甚爲輕安 當於扈從日服之」.

단을 겹감으로 하고 모피를 안에 받친 裘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볼 때,<sup>52)</sup> 초피를 주로 안감으로 해서 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17세기 효종이 송시열에게 하사했던 초구를 보면<sup>53)</sup> 시기상의 차이는 있더라도 초피를 겹감으로 하고 있어 초피를 안감 또는 겹감으로 덧대어 제작했다.



<그림 2> 우암 송시열 초구<sup>54)</sup>

虛胸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료는 부족한 상황이다. 초피허흉은 연산군 1년(1495)까지만 확인되어 조선전기에 착용했던 의복이다.<sup>55)</sup> 구체적인 형태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깃이 마주보는 형태로 앞이 여며지지 않으며 소매가 짧은 털 옷으로 보고 있다.<sup>56)</sup>

護膝은 膝甲으로 겨울에 추위를 막기 위해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입은 의복이다. 바지위에 끼입으며 앞쪽에 끈을 달아 허리띠에 걸쳐 댔다.<sup>57)</sup> 초피호슬은 중

51) 『太宗實錄』 卷34, 太宗 17年 7月 13日. 「黃儼出鵝青綵段胡衣曰 請以貂皮爲裏」.

52) 정복남, 앞의 논문, 1992, 88쪽.

53) 『孝宗實錄』 卷20, 孝宗 9年 12月 10日. 「下敎曰 近觀吏曹判書宋時烈所着衣服 甚涼薄 爲慮其寒苦 造此貂裘 而因予之病 未得面賜 政院傳賜此衣 兼諭予意 使之勿謝」.

54) 국립청주박물관, 『우암 송시열』, 통천문화사, 2007, 64쪽.

55) 『燕山君日記』 卷2, 燕山君 1年 1月 6日. 「告訃使等發程日迫 行裝必不及具 官給衣服何如 院相及承旨等 啓有前例 賜貂皮耳掩 貂皮毛冠各一事 貂皮虛胸」.

56) 박성실, 『朝鮮前期出土服飾研究 壬辰倭亂 以前 時期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452~459쪽; 안보연, 「우리나라 모피 피혁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41쪽.

57) 『譯語類解』 「護膝○膝甲」. (韓國學研究院, 앞의 책, 1988);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도서출

국 사신에게 회증한 기록에만 나타나며 주로 의례적인 용도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襖子는 핫옷을 의미하여 방한의복이었다.<sup>58)</sup> 短襖子가 ‘더른 한저구리’·‘더른 핫옷’·‘저른 핫옷’으로 언해되어<sup>59)</sup> 초피오자·초피단오자는 저고리의 한 종류로써 초피로 만든 上衣였다.

帖裏는 철릭이라고도 하며 저고리와 치마를 허리에 주름을 잡아 연결한 袍의 형태로 관복의 하나이다. 세조 5년(1459) 한명회에게 초피 안에 흰색 얇은 비단을 덧댄 첩리(貂皮內白絹帖裏)를 하사했으며 철릭에 초피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sup>60)</sup> 관리들이 외국사신으로 파견될 때, 國亂의 비상시나 사냥을 갈 때 착용했다. 그 외에 연산군 8년(1502) 궁인들이 초피로 만든 裙을 착용해 사치풍조를 비판한 기록을 보면 치마로도 제작했다.<sup>61)</sup>

## 2) 冠帽

관모에는 貂皮耳掩·貂皮毛冠·貂皮冠이 있었다. 이엄은 귀를 덮어 보온을 위해 착용했던 방한구로 이엄위에 紗帽나 祭冠을 착용했다.<sup>62)</sup> 세종 14년(1432) 11월 大小朝會와 常參朝啓를 행할 때 바람이 불고 추운 날 관리들은 중국의 예에 따라 평상시는 이엄을 쓰되 副提學 이상은 초피와 段子를 사용하고, 司諫 이하 9품까지는 鼠皮와 靑絹를 사용하도록 했다.<sup>63)</sup> 『경국대전』의 기록에도 품계에 따라 재료에 차등을 두어 초피이엄은 정3품 당상관까지만 착용하도록 했다.

관 미술문화, 1999, 258쪽; 김진구, 「朴通事 諺解의 服飾研究」, 『복식문화연구』 제8권 3호, 복식문화학회, 2000, 158~159쪽.

58) 『譯語類解』 「襖子○핫옷」. (韓國學研究院, 앞의 책, 1988); 서정원, 앞의 논문, 2003, 31쪽.

59) (翻譯) 『老乞大』 하 51면 앞. 「銀褐紵絲板摺兒短襖子 부희여흔 비젯 비단 너븐 주름 털릭과 더른 한저구리와」; 『老乞大諺解』 하 46면 앞. 「銀褐紵絲板摺兒短襖子 은 빗채 비단 너븐 주름 털릭과 더른 핫옷과」; 『重刊老乞大諺解』 하 48면 앞. 「銀色紵絲板摺兒短襖子 은 빗히 비단 너븐 주름 저른 핫옷과」.

60) 『世祖實錄』 卷18, 世祖 5年 11月 12日. 「平安黃海道都體察使韓明滄辭 御忠順堂引見 設酌餞之仍觀射 賜明滄綵段帖裏貂皮內白絹帖裏弓矢馬粧」; 帖裏는 天翼이라고도 한다(유희경·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81, 236쪽).

61) 『燕山君日記』 卷46, 燕山君 8年 10月 8日. 「命入貂皮六十領 時賞賜無節 宮人競以奢侈相尙至以貂皮爲裙者 貂皮價極踴貴 一領至直蘇布十四」.

62) 김영숙, 앞의 책, 1999, 311쪽.

63) 『世宗實錄』 卷58, 世宗 14年 11月 10日. 「傳旨禮曹 大小朝會及常參朝啓 風寒之日 老疾之臣觸寒行禮 未便 自今大小臣僚 依中朝例常著耳掩 副提學以上 用貂皮段子 司諫以下至九品 用鼠皮靑絹」.

〈표 2〉 이엄 제도(1485년)<sup>64)</sup>

		품계	
재료	1품 ~ 정3품 당상관	정3품 당하관 ~ 9품	
	段 · 貂皮	綃 · 鼠皮	

毛冠은 모피로 만든 방한모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명칭으로 재료에 따라 분류된다.<sup>65)</sup> 貂皮冠·貂皮毛冠이 있었으며 왕이 착용하는 翼善冠 제작에도 초피를 사용했다.<sup>66)</sup>

이와 같이 문헌상의 초피를 활용해 제작한 제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왕실의 방한 복식문화를 엿볼 수 있으며 대부분 초구와 초피이엄 종류가 많아裘와 이엄 제작이 주요 목적이었다. 왕실과 정3품 당상관 이상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초피착용이 제한된 점에서 볼 때, 초피복식은 조선사회에서 신분과 지위를 대표하는 옷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수요처에 대한 『경국대전』의 규정은 복식착용을 통한 사회질서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둘째, 의복에 주로 아청색·초록색·홍색의 비단과 함께 사용한 점도 특징이다. 색이 진한 옷감은 대부분 염료가 많이 들어가서 염료의 양 때문에 진하게 물들일수록 공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고급 옷감이었다.<sup>67)</sup> 段·紵絲·紬·綃 등의 고급 비단을 함께 사용해 귀족 복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셋째, 이엄에 향이 나는 침향 갓끈을 달아서도 제작하여 방한 목적이외에 의례적 장식용도가 더해진 특징이 있다. 또한 방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목을 두르는 방한구와 침구도 제작하여 상류층에서 향유했을 성격이 드러난다. 지금까지 초피를 활용한 방한제품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4) 『經國大典』禮典 儀章條 冠 기록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65) 강순제·김은정, 「문헌을 통해 본 조선시대 방한모 명칭에 관한 연구」, 『복식』 제58권 7호, 한국복식학회, 2008, 138~140쪽.

66) 『明宗實錄』卷28, 明宗 17年 8月 2日. 「諫院啓曰 翼善冠貂皮之貢 定於平安道江界府 每年上納而爲守令者 濫徵加數 民已苦之」; 왕은 곤룡포를 입고 시무를 보는 것이 주된 임무였기 때문에 視事服이라 하며 익선관·곤룡포·대·화로 구성된다. 익선관은 모정이 2층으로 된 형태이며 양 각이 관 뒤에 붙어있다(이민주, 『조선의 왕실복식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66~68쪽).

67) 『中宗實錄』卷21, 中宗 9年 10月 25日. 「昔之染草綠爲衣者 其色只取如草之綠而止耳 今則其色深於鴨頭 而染鴨頭者 則轉爲雅青 爭效新樣 功重費廣」.

〈표 3〉 15~16세기 초피를 활용한 방 제품<sup>70)</sup>

구분	명칭	종류
의복	구	貂裘·아청색 모시를 덧댄 초구(鴉靑紵絲貂裘)·아청색 비단을 덧댄 초구(鴉靑段子貂裘·鴉靑四段貂裘) <sup>68)</sup> ·초록색 비단을 덧댄 초구(草綠四段貂裘)
	허흉	貂皮虛胸·아청색 비단을 덧댄 초피허흉(鴉靑段子貂皮虛胸·鴉靑四段貂皮虛胸)·초록색 비단을 덧댄 초피허흉(草綠段子貂皮虛胸·草綠四段貂皮虛胸)·초피를 덧댄 비단허흉(貂皮四段虛胸)·비단을 덧댄 초피허흉(四段貂皮虛胸)·비단과 토표피 뒤에 초피를 덧댄 허흉(四段土豹皮背貂皮虛胸)
	호슬	貂皮護膝·초피 안에 홍색 비단을 덧댄 호슬(貂皮裏紅段子護膝)·홍색 모시와 초피를 안에 덧댄 호슬(素紅紵絲貂皮裏護膝)·진한 홍색 비단을 덧댄 초피호슬(大紅段子貂皮護膝)·진한 홍색 비단 안에 초피를 덧댄 호슬(大紅四段內貂皮護膝)·진한 홍색 비단과 초피를 안에 겹쳐서 덧댄 호슬(大紅四段貂皮內拱護膝)
	오자	貂皮襖子·초록색 명주를 덧댄 초피오자(草綠紵貂皮襖子)
	단오자	비단을 덧댄 초피단오자(綵段貂皮短襖子)
	철릭	초피 안에 흰색 얇은 비단을 덧댄 첩리(貂皮內白絹帖裏)
	치마	貂皮裙
관모	이엄	貂皮耳掩·아청색 비단을 덧댄 초피이엄(鴉靑段子貂皮耳掩·鴉靑四段貂皮耳掩)·아청색 얇은 비단을 덧댄 초피이엄(鴉靑絹貂皮耳掩)·비단을 덧댄 초피이엄(四段貂皮耳掩)·아청색 비단을 덧댄 초피감토이엄(鴉靑四段貂皮甘吐耳掩)·아청색 비단을 덧댄 초피감토를 붙인 이엄(鴉靑四段貂皮甘吐付耳掩)·아청색 비단을 덧댄 초피이엄모구(鴉靑四段貂皮耳掩帽具)·침향 갓끈이 달린 초피이엄(沈香纓子具貂皮耳掩) <sup>69)</sup> ·침향 갓끈이 달린 아청색 비단을 덧댄 초피이엄(沈香纓子具鴉靑四段貂皮耳掩)·침향을 묶은 갓끈이 달린 아청색 비단을 덧댄 초피이엄(沈束香纓子具鴉靑四段貂皮耳掩)
	관	翼善冠·貂皮冠·아청색 비단을 덧댄 초피모관(鴉靑段子貂皮毛冠·鴉靑四段貂皮毛冠)·아청색 비단을 덧댄 초피관(鴉靑段子貂皮冠)·아청색 비단을 덧댄 이엄과 이어진 모관(鴉靑四段貂皮耳掩并毛冠)
화	화	흰색 사슴가죽 안에 초피를 덧댄 화(白鹿皮內貂皮靴)
장신구 및 기타		貂皮回項·衾

68) 『譯語類解』 「扯段子○비단근타」. 段子를 비단으로 언해하고 있다(韓國學研究院, 앞의 책, 1988); 고대에는 緞을 段·注絲등으로 명명했다. 段은 직물 수량의 단위로도 사용되었지만 『당육전』에 羅·錦·綾·段·紗·縠·繩·紵라 하여 각종 직물명과 나란히 열거되어 있어 段도 일종의 직물 명이었다(심연옥, 『중국의 역대직물』, 한림원, 1998, 124쪽); 四段은 필로 된 비단을 뜻한다(단국대학교출판부, 『韓國漢字語辭典』 卷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7, 665쪽).

69) 沈香은 팥꽃나무과에 딸린 늘푸른나무로 주로 인도나 동남아시아에 분포한다. 생나무 또는 마른 나무를 땅 속에 묻어 樹脂가 적은 부분을 사용했다. 과거 귀족들은 침향을 수입하여 의복이나 기물에 그 향이 스며들게 하거나 태워서 향기를 내게 하는 용도로 사용했다(제금련·신용욱·이병희·주매분·장승업, 침향, 『경희약대논문집』 제30권, 경희대학교 동서약학연구소, 2002, 85~86쪽).

70)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다음은 제작을 담당했을 장인을 살펴보고자한다. 조선의 공장제는 京工匠과 外工匠제로 편제되었으며,<sup>71)</sup> 경공장에서 피물을 담당했던 장인은 裹皮匠·靴匠·熟皮匠·斜皮匠<sup>72)</sup>·毛衣匠·毛冠匠·生皮匠·周皮匠·熊皮匠·狍皮匠으로 10종류였다. 초피제품들과 연관 지어 살펴보았을 때 옹피장·전피장을 제외한<sup>73)</sup> 8종류의 장인이 담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京工匠 초 관련 장인 (1485년)<sup>74)</sup>

장인	소속		
	공조	상의원	제용감
과피장	2	4	-
화장	6	10	-
숙피장	10	8	2
사피장	4	4	-
모의장	-	8	-
모관장	-	2	2
생피장	-	2	-
주피장	6	-	-
계	28	38	4

<표 4>를 보면 초피제품 제작을 담당했을 장인들은 공조<sup>75)</sup>·상의원·제용감 소속이었다. 특히 상의원은 궁궐의 의복 관련 물품과 재물을 맡아보던 관아로 직물류와 모피류로써 각종 의복과 장신구 등을 제작했다.<sup>76)</sup> 제용감 역시 왕실의 내탕 기능을 하며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포물을 수납하고 임금이 하사하는 의복을 만드는 일이 주 업무였다.<sup>77)</sup> 장인들은 이러한 관청에 속해 초피를 활용한 제품 제작에 참여했으며 장인의 수가 상의원·공조·제용감의 순서로 달랐다.

71) 이혜옥, 「조선전기 수공업체제의 정비」, 『역사와 현실』 제33호, 한국역사연구회, 1999, 25쪽.  
 72) 사피장은 모피나 초피를 다스린 장인이라 하고 있다(한국고전용어사전편찬회, 『한국고전용어사전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150쪽). 『雅言覺非』에서 사피는 잘못 옮겨져서 黍皮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의 가죽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雅言覺非』 卷3, 「斜皮誤翻爲黍皮」). 사피를 손질한 담비가죽(송방송, 『악학궤범용어총람』, 도서출판보고사, 2010, 160쪽)이라 하고 있지만, 각 연구서마다 사료의 출전도 불명확하여 더 정확한 검토와 연구 후 보완해야할 부분이다.  
 73) 옹피장·전피장은 각각 곰가죽·염소가죽을 다루는 장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했다.  
 74) 『經國大典』 工典 京工匠條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75) 공조에 의복과 관련된 장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고려시대 尙衣局이었던 掌服署가 공양왕 3년 공조에 합쳐졌기 때문에 상의원뿐만 아니라 공조 또한 의복생산이 가능했다(이충선, 「朝鮮前期 官營手工業 體制의 再建과 運營」,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7쪽).  
 76) 송수환, 「조선전기의 尙衣院」, 『경희사학』 제21호, 경희대학교사학회, 1997, 62~65쪽.  
 77) 이민주, 앞의 책, 2013, 214쪽.

### Ⅲ. 貂皮 需要層의 擴大와 密貿易

#### 1. 초피 생산지와 공납실상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田租, 徭役 및 軍役, 貢物로 나누어 크게 세 종류로 수취했다. 그 중 공물은 지역의 토산물과 수공업품이 주류를 이루며, 『세종실록지리지』의 각 도별 품목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중복된 품목을 제외하면 평균 200여 품목에 달한다. 이러한 공물들을 수취하는 공납제도는 태종 13년(1413)에 완비되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sup>7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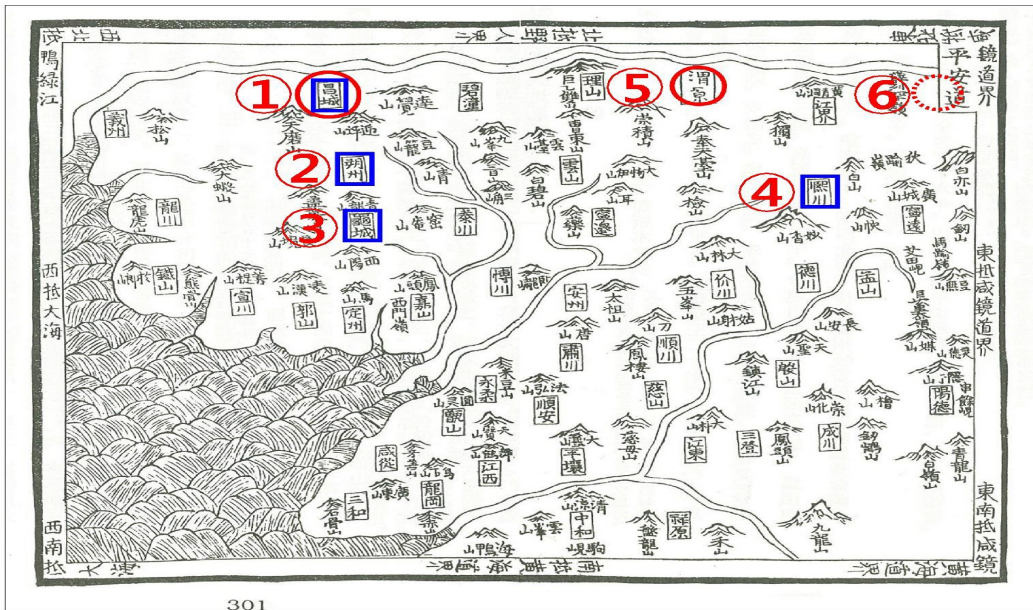
초피 또한 정부에서 공납으로 충당했으며 상의원에서 수납을 담당했다. 국용의 초피를 국고의 곡식과 布를 지출하여 사들이거나,<sup>79)</sup> 여진인들이 서울로 상경할 때 진상했던 초피도 사용했다.<sup>80)</sup> 다음의 지도와 표를 보면 평안도와 함경도의 북방 변경지역에서 공납으로 바쳤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의 貢案이 현존하지 않아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土貢·土産 항목을 살펴보았다.<sup>81)</sup>

78) 김진봉, 「朝鮮初期의 貢物代納制」, 『史學研究』 제22호, 한국사학회, 1973, 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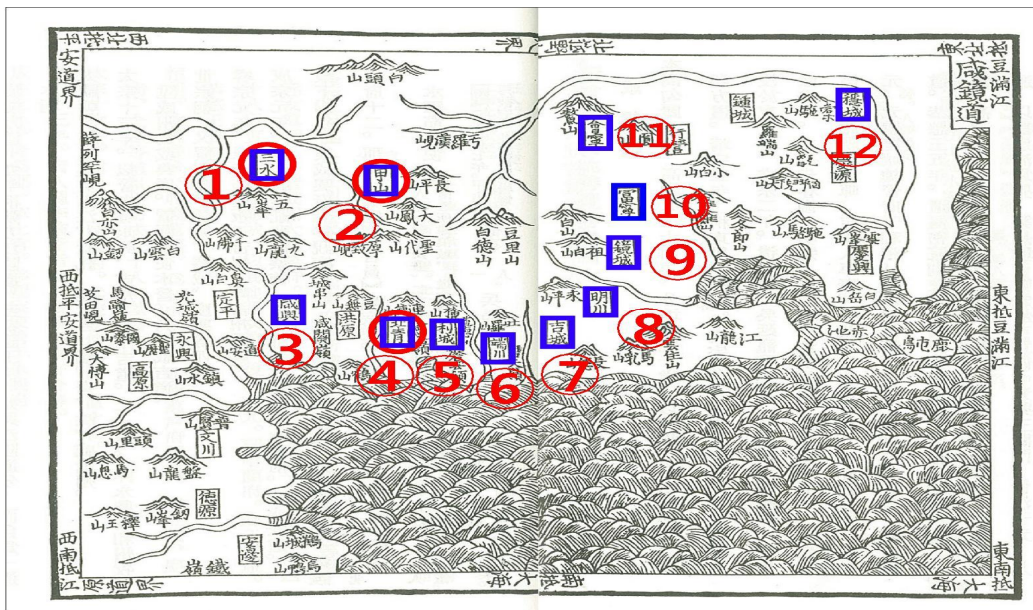
79) 『世宗實錄』 卷38, 世宗 9年 10月 14日. 「傳旨平安咸吉道監司 進獻上品貂皮頭足各具一百五十領 隨其自願 優給米布貿易 及時上送 又傳旨戶曹 亦於京中 一百領 從自願貿易」.

80) 『燕山君日記』 卷42, 燕山君 8年 1月 26日. 「傳曰 野人進上貂皮五十六張 下尙衣院」.

81) 최근 소순규는 『세종실록지리지』 물산항목에서 토공은 해당 군현의 공물과 정확히 대응되는 항목이 아니라, 공물 중에서도 관비공물만을 기록한 것이라 했다. 토산은 해당 지역의 특산물로 해당 군현의 공물로 지정되었을 것이나, 관비공물로서가 아니라 각 민호가 부담하는 형태의 공물이었을 것 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여기서 관비공물이란 민에게 공물을 직접 부과하지 않고 관에서 생산시설을 마련하여 군사·관노비·백성들을 요역시켜 직접 생산하고 납부해야 하는 물종을 말한다(이재룡, 「국가재정」, 『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2003, 459쪽). 토공은 해당 지역의 공물이며, 토산은 해당지역의 토산품 중 경작 작물을 제외한 것이나, 물산을 기록한 것 이라는 기존의 연구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소순규, 「『世宗實錄地理志』를 통해 본 朝鮮初 貢物 分定의 실제와 특성- 厥貢·土貢·土産 항목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제161권, 2013).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의 물산항목은 수취제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과 달리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토산으로 항목을 단일화하고 지역의 공물과는 상관없이 실제 지역의 산물을 기록했던 것이라고 했다. 기록이 변화한 원인은 당초 지리지의 편찬목적이 달랐다는 점과 16세기 공물 수취의 관행이 변화한 점으로 설명했다(소순규, 「『신증동국여지승람』 토산 항목의 구성과 특징」, 『東方學志』 제165집, 2014).



<그 3> 평안도 피 토공·토산지역<sup>82)</sup>



<그 4> 함경도 초피 토공·토 지역<sup>83)</sup>

(<그림 3·4> ○ : 『세종실록지리지』 기록된 지역, □ :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된 지역)

- 82) 朝鮮史學會 編, 『新增東國輿地勝覽』 第四, 『韓國地理風俗誌叢書 308』, 경인문화사, 2005; 왼쪽부터 ①장성, ②사주, ③귀성, ④회진, ⑤위원, ⑥무장(세조 1년(1455) 4군이었던 자성·우예·여연·무장군을 폐지하면서 무장 관할을 강계부로 소속시키고 주민은 귀성부로 옮겼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 지역이 실려 있지 않아 실선으로 표시했다.)
- 83) 朝鮮史學會 編, 『新增東國輿地勝覽』 第四, 『韓國地理風俗誌叢書 308』, 경인문화사, 2005; 왼쪽부터 ①삼수, ②갑산, ③함흥, ④북청, ⑤이성, ⑥단천, ⑦길성, ⑧명천, ⑨경성, ⑩부령, ⑪회령, ⑫온성

<그림 3>·<그림 4>에 표시된 지역과 같이 평안·함경도지역의 여러 도호부·군·현에서 초피공납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 5> 초피 토공·토산지역<sup>84)</sup>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평안도	창성군·무창군·위원군·회천군	창성도호부·삭주도호부 귀성도호부·회천군·벽동군
함경도	북청도호부·갑산군·삼수군	북청도호부·갑산도호부·경성도호부 회령도호부·온성도호부·부령도호부 함흥부·삼수군·단천군·이성현 길성현·명천현

앞의 <그림 3>·<그림 4>·<표 5>에서 나타나듯이 토공·토산 항목에 따른 특산물을 기반으로 작성된 초피공납 분정은 북방 변경지대를 포함하고 있는 점과 후일 여진과의 초피거래 동향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볼 때, 이들 지역은 정부의 관심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초피공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초피를 공납하는 해당 군현에 다른 공물을 감하여 주거나,<sup>85)</sup> 초피 산지를 발견하게 되면 內需所에 소속시키지 않고 관에 소속시켰다.<sup>86)</sup> 다음의 사료는 국초에 정해지지 않았던 초피공납 수량을 세종대에 정한 기록이다.

⑨ 호조에서 계하기를, 평안도와 함길도에서 상납하는 초서피는 정해진 수량이 없기 때문에, 매년 상납하는 수량이 많다가 적다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불편합니다.

84)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공·토산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토공·토산 항목에는 貂鼠皮·貂皮·獬鼠皮로 기록되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토산 항목에 모두 貂로 기록되어 있다.

85) 『太宗實錄』 卷14, 太宗 7年 8月 6日. 「鑄江界歲貢清蜜甲州貫甲皮 蓋欲使依前採捕貂皮以獻也」.

86) 『世宗實錄』 卷19, 世宗 5年 2月 5日. 「大護軍李浩上言 祖父傳來 貂鼠所產北靑地別河水洞 請屬 內需所 上不許 仍命戶曹 李浩所占別河水洞屬公 以備國用 其他私占山水 所在官並推刷屬公」.

1년 동안 나라에 쓰이는 원 숫자를 두 도에 생산되는 수의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평안도에 초피 700령과 서피 500령, 함길도에 초피 1,365령과 서피 3,990령을 정한 수효로 하여 상의원에 바치도록 하고, 함길도에는 또 營中神稅布로 초피가 생산되는 갑산군에서 해마다 초피 200령을 사서 別例로 진상하는 것을 定式으로 하고, 또 평안도에서 본국 사신에게 초피를 증여하는 것은 일절 금하기를 청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sup>87)</sup>

사료 ⑨에서 세종대 초피공납 수량을 평안도는 700령, 함경도는 1,365령을 분정했다. 또한 함경도는 神稅布로 갑산군에서 해마다 초피 200령을 사서 別例 진상도 하도록 했다. 분정된 초피 수량을 보면 함경도는 평안도보다 거의 두 배로 많은 수량이 분정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 다른 분정사례에 대해서 당시 함경도와 강원도에서는 신세포를 바쳤다.<sup>88)</sup> 신세포는 국가에서 무속인에게 稅로 걷었던 布木으로, 원래 신을 섬기는 백성들로부터 神幣로 사용할 배를 걷었던 것을 나라에서 세공으로 징수했었다. 그러나 중종대에는 백성들에게까지 戶布로 民戶당 1필씩 징수하도록 변질되어 수령이나 감사들이 남용하는 폐단이 심했다.<sup>89)</sup>

한편, 당시의 공납제도는 고려시대의 누적된 여러 공납폐단을 제거한 것이었지만 田稅보다 그 비중이 과중했을 뿐만 아니라 시기가 흐르면서 불합리한 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즉, 공물은 부과단위가 지방 各官이었기 때문에 전세에서처럼 합리적인 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不產貢物의 분정, 공물의 引納과 加定, 外貢의 斥退 등이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었다.<sup>90)</sup>

초피공납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먼저, 산지의 제한된 여건으로 먼 변방에서만 생산되었고, 생산지에서도 많은 수량을 구하기 쉽지 않아 공물을 충당하기가 어려웠다.<sup>91)</sup> 또한 품질이 진상하기에는 부적합 했다.

87) 『世宗實錄』 卷29, 世宗 7年 8月 27日. 「戶曹啓 平安咸吉道上納貂鼠皮 緣無定數 每年上納之數多少不同未便 請將一年國用元數 參酌兩道所產多少 平安道貂皮七百領 鼠皮五百領 咸吉道貂皮一千三百六十五領 鼠皮三千九百九十領 以爲定額 納之尙衣院 咸吉道則又以營中神稅布 於所產甲山郡 每年買貂皮二百領 別例上進 以爲恒式 且平安道本國使臣貂皮贈給一禁 從之」.

88) 『世宗實錄』 卷32, 世宗 8年 5月 25日. 「江原咸吉道 神稅布之貢 他道所無」.

89) 『中宗實錄』 卷20, 中宗 9年 2月 1日. 「江原咸鏡兩道 每戶徵布一匹 名曰神布 大邑或至萬餘匹 固非國家之用 而徒爲官府私費之物 此無名之稅 而民弊不貲」.

90) 김진봉, 「朝鮮前期의 貢物防納에 대하여」, 『史學研究』 제26호, 한국사학회, 1975, 67쪽.

91) 『成宗實錄』 卷40, 成宗 5年 3月 1日. 「貂鼠樺皮 雖產於本府 而未易多得 又不可月入胡地以取之 無以充貢」; 『成宗實錄』 卷145, 成宗 13年 閏8月 3日. 「貂鼠皮 雖產於本國 亦難捕得」; 『中宗實錄』 卷21, 中宗 9年 10月 25日. 「今夫貂皮鼠皮 蓋出於極邊 取之甚難」.

숲이 우거진 험준한 산림에서 담비를 포획하는 일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담비의 크기가 크지 않아 초구 한 벌을 제작할 때 60장 정도가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sup>92)</sup> 초피가 분정되었을 수량에 비해 막상 백성들이 포획하는 수량은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품질이 얇아 좋지 못했고, 빛깔이 누렇게 두꺼워 진상하기에는 부적합했다.<sup>93)</sup>

둘째, 초피를 산지가 아닌 지역에도 不産貢物로 분정했고, 공안을 쉽게 고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공물은 중앙各司에 비치된 공안에 의거하여 대개 중앙각사 → 各道 → 各郡縣의 체계로 부과되었다. 그리고 각 군현에 분정하는 공물은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는 一定不動의 성격과 그 지방에서 산출되는 토산물로 부과하는 任土作貢의 원칙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해당지역에서만 토산품을 분정하게 되면 집중적인 수탈이 이루어지고, 세월의 경과에 따라 공물의 감소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공물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른 불산공물도 분정되었다.<sup>94)</sup>

특히 함경도의 六鎭이나 부령을 제외한 경원·회령·중성·온성·경흥 지역의 五鎭은 초피 산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안에 기재되어 초피공납에 백성들이 시달렸다는 기록이 빈번했다. 다음의 사료에서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⑩ 지난번 五鎭에 사는 백성이 上言하여 초피 바치는 것을 면제해 주도록 청하였는데, 該曹에 회부하여 의논하게 하니, 該曹에서 아뢰기를, 공물로 정한 것이 이미 오래 되어 고칠 수 없습니다 하여, 마침내 시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임금이 말하기를, 五鎭에서 초피를 바치는 것은 어느 때에 시작되었는가 하였는데, 홍귀달이 말하기를, 오래되지 아니하였습니다.<sup>95)</sup>

⑪ 초피는 본래 五鎭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데 공안에 기록되었으므로 五鎭의 백성이 할 수 없어서 牛馬와 農器를 가지고 몰래 野人과 바꾼다고 하니…<sup>96)</sup>

92) 徐有渠 纂, 『林園十六志』 第2卷 膳用志 卷3, 서울대학교고전간행회, 1967, 一貂之皮方益尺積六十餘貂僅成」.

93) 『中宗實錄』 卷87, 中宗 33年 5月 16日. 「甲山貂皮 色黃而毛厚 不合於進上 然以其土產捧之矣」; 『中宗實錄』 卷94, 中宗 35年 11月 3日. 「進上則土產毛薄 不合封進…進上貂皮 雖數少 而我土所產百不用一」; 『明宗實錄』 卷33, 明宗 21年 10月 24日. 「及到甲山 府民之號訴者滿路 皆以爲清蜜貂鼠皮之貢 最難支吾 山高倍寒 不能養蜂 府地所產皮毛 惡不用」.

94) 박도식, 「조선전기 공납제의 특징」, 『인문학연구』 제13호, 2009, 7~23쪽.

95) 『成宗實錄』 卷52, 成宗 6年 2月 2日. 「向者 五鎭居民上言 請免貂皮之貢 下該曹議之 該曹啓 以作貢已久 不可改也 竟不施行…上曰 五鎭貢貂皮 始於何時 貴達曰 不久」.

96) 『成宗實錄』 卷225, 成宗 20年 2月 28日. 「貂皮本不產於五鎭 而錄於貢案 五鎭之民不得已 將牛馬農器潛市野人…」.

⑫ 戶曹에서 영안도관찰사 이봉의 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초피의 공납은 영안도의 五鎭에서 하는 것이 많고, 공안에도 이미 적혀 있는데 內地의 여러 고을에서는 貂鼠가 많이 나지 않으므로 五鎭에서 공납하던 것을 內地에 옮겨 배정하면, 백성이 피해를 받을 것이고 백성에게서 값을 거두어 사서 바치는 것도 그 땅에서 나는 것에 따라 공물로 삼는 뜻에 어긋나서 공안에 따라 상납하고 옮겨 배정하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sup>97)</sup>

六鎭을 설치한 후 이곳은 처음에는 공물이 없고 신세포만 바쳤다.<sup>98)</sup> 六鎭은 세종대의 북방정책으로 여진족을 방어하기 위해 두만강 유역에 설치한 군사적 요지이며 사민정책을 시행하여 백성들을 이주시키기도 했다. 四郡은 세조대 폐지되었지만 六鎭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초피가 <표 5>의 『세종실록지리지』에서 五鎭지역의 토공이나 토산 항목에 실려 있지 않았던 점으로도,<sup>99)</sup> 국초부터 五鎭에서는 초피공납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료 ⑩과 같이 초피가 생산되지 않았지만 성종대에 공물로 분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초피를 산지에서만 받아들이는 공물 수량으로는 국용의 수요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산지가 아닌 지역까지 공물분정은 불가피했다. 국가의 수요를 헤아려 공안을 책정했기에 공물이 생산되지 않은 지역에도 분정했고, 이미 공안에 기재되면 없애기 쉽지 않았다. 또한 공물을 다시 다른 군현으로 옮기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공안을 쉽게 바꾸거나 공물 분정을 균일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연산군대에도 평안·함경도지역에 초피를 공물로 많이 분정했다.<sup>100)</sup> 초피를 하

97) 『成宗實錄』 卷230, 成宗 20年 7月 1日. 「戶曹據永安道觀察使李封啓本啓 貂皮之貢 多在永安道五鎭 而已錄于貢案 內地諸邑則貂鼠不多產 若以五鎭所貢 移定于內地 則民必受弊 若收價於民 質換納之 亦非任土作貢之意 請依貢案上納 勿使移定 從之」.

98) 『文宗實錄』 卷4, 文宗 卽位年 10月 10日. 五鎭本無貢物 惟納神稅布 令戶曹 移文考覈 磨勘施行」.

99) 본래 『세종실록지리지』는 세종 14년에 만들어진 팔도지리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六鎭의 설치하는 세종 15년(1433)이었음으로 새로 개설된 지역에 대해서는 실려 있지 않았다. 하지만 세종 사후 팔도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六鎭지역에 대한 지리정보를 새로 조사하도록 명령하였고 (『端宗實錄』 卷9, 端宗 1年 12月 21日. 「諭咸吉平安道觀察使曰 咸吉道會寧 鍾城 穩城 慶興 三水利城 富寧 洪原等諸邑 平安道慈城 茂昌 渭原 茂虞等諸邑創設沿革年月 及山川地理土性土貢戶口之類 及時開具以聞」)단종대 『세종실록지리지』 편찬과정에서 지리지에 부록되었다(소순규, 앞의 논문, 2013. 61쪽).

100) 『中宗實錄』 卷5, 中宗 3年 3月 16日. 「臣聞北方鎭戍虛疎 穩城等處 疲弊尤劇者 當弊朝困於責納貂鼠皮」; 『中宗實錄』 卷6, 中宗 3年 8月 16日. 「臣以遠接使 往還平安道時 聞在廢朝 多定貂皮等物于邊氓」.

사하는 것에 절도가 없었고 초피를 대궐로 들이라는 명령이 잦았다.<sup>101)</sup> 당초 초피를 국용으로 온당하게 쓰기 위함이 아닌 연산군의 초피 남용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백성들의 초피공납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공물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質納과 防納의 폐단, 수령들이 진상이라 칭탁하여 광범위한 주구가 발생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초피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진상용으로 부적합했던 점, 불산공물로 분정되었던 수량들은 초피 무역과 직결되었고, 방납의 폐단을 겪어야 했다.

방납의 폐단은 비단 초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었다. 당시 국가에서는 방납을 금지했지만, 백성이 쉽게 自備할 수 없는 공물에 한해 특수기관 또는 佛事와 관계된 幹事僧에게 부분적으로 방납을 허용했었다. 그 해당 공물은 木炭과 瓦窯에 바치는 吐木 등이었다. 토목은 정부의各司와 민간생활에 필수적인 연료였지만 일반 백성이 備納하기에는 어려웠다.<sup>102)</sup> 특히 窯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토목은 수량이 막대하여 일반 백성들이 감당하기 힘든 노역이었다. 간사승들은 토목 운반에서 방납을 주도하며 토목 이외의 잡공도 자신들을 통해 대납하도록 했다. 또한 공물의 값을 열 배나 증가한 금액을 부풀려 받거나, 귀후소·동서별요 등의 간사승들은 상인과 결탁하여 미리各司에 보고를 올린 후 백성들에게 공물 값을 핑계로 돈을 뜯어내는 지경이었다. 이외에도 富商 潘石老는 강제방납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이때 관련된 관리들도 처벌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sup>103)</sup> 당시 幹事僧·富商大賈·各司吏奴등이 국가권력에 편승하거나 관리들과 결탁한 방납활동으로 백성들에 대한 경제적 침탈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101) 『燕山君日記』 卷46, 燕山君 8年 10月 8日. 「命入貂皮六十領 時賞賜無節」; 『燕山君日記』 卷57, 燕山君 11年 4月 10日. 「下書于平安咸鏡兩道觀察使曰 土豹豺狼獾鼠等獸生捉以進」.

102) 『世宗實錄』 卷87, 世宗 21年 11月 11日. 「各官貢物防納之禁 著在令甲 然慮民之力 繕工監納木炭瓦窯納吐木 許令防納」; 박도식, 앞의 책, 2011, 190쪽.

103) 『世宗實錄』 卷109, 世宗 27年 8月 27日. 「又各司經用雖小小物 皆諸州所貢 民間所斂也 諸般物色 奚啻百數 其中民間自備者 容或有之 率多斂價 其價之增 幾於十倍 若校書館東西別窯歸厚所等 幹事僧及富商賈之輩 預受陳省 納于各司 秋成到其官 受某戶幾斗某戶幾升收納之文 到戶催促 今日收油價 明日收炭價 收多般貢價者 連日而至 或一日並至而共催 民之受侵 不可殫記 然有前式 莫或少避 一一備給 此雖不在租稅之例 亦國家經費不可廢也 又催納糶米 差使到門 少有遲回 卽加鞭撻 又負私價者則其主又到而促之 若不卽納 留受供億 民不堪苦 雖無所儲 至賣田宅馬牛以償之 一夫之耕 所獲幾何」; 『世宗實錄』 卷18, 世宗 4年 閏12月 19日. 「有富商潘石老者日造司僕寺門 京畿農民所納穀草 擅自點退 以己私備穀草防納 將欲倍收價米於民 事覺 命杖百 籍沒家產 定爲外方官奴 判事金光義判官金自雍俱以知而不禁 坐罪」; 전영준, 「조선전기 別瓦窯의 설치와 財政 運營」, 『장서각』 제31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250~251쪽.



⑬ 상의원에 공물로 바치는 초피를 민간에 지정하여 상납하게 하는데, 그 지역에서 산출되는 가죽은 進上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많이 잡아 한양에 와서 바꾸어 상납하는데 값이 너무 비싸므로 주민들이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sup>104)</sup>

⑭ 外貢雜物을 上納할 때에 지방의 아전들이 비록 本色의 좋은 물품을 납입하고자 하여도各司의 下人과 防納者가 제가 준비하고 있는 물품이 아니면 중간에서 간계를 부려 온갖 방법으로 퇴짜를 놓기 때문에 지방의 아전은 부득이 비싼 값을 주고 방납자의 물품을 사고서야 비로소 관에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관에 바친 물품은 거의 다 나쁜 물품이므로 토산물을 공납하게 한 본의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방납인은 비싼 값을 요구하여 해마다 더 올리고 달마다 더 비싸게 매깁니다. 그리하여 양 한 마리의 대가가 면포 7동에 이르고, 초피 1장 값이 官木 4동에 이르고, 새 한 마리의 값이 관목 30필에 이릅니다. 다른 물품도 거의 다 이 같이 비쌉니다.<sup>105)</sup>

초피가 생산되지 않았던 군현의 백성들은 산지로 가서 質納하여 바쳤다.<sup>106)</sup> 또는 사료 ⑬의 내용과 같이 진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초피를 많이 마련하여 도성에서 京商들과 교환한 후 공물을 납부했다. 하지만 京商들이 초피를 비싼 값으로 받아 공물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료 ⑭는 지방 공리들이 좋은 초피를 납부하고자 하여도 각사의 하인과 방납자가 점퇴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비싼 값을 주고 방납자의 물품을 사야 관에 바칠 수 있었던 폐단에 시달려야 했다. 각사의 하인은 吏奴로 胥吏를 지칭하는 자였다. 지방군현의 공리가 가져온 조세·공물의 최종 수납은 이들이 담당했으나,各司吏奴들은 그 실무를 빙자하여 방납을 통해 이익을 도모했다.<sup>107)</sup>

한편, 수령에게 초피를 재촉하여 바치게 하자 진상이라 칭탁하여 백성들에게

104) 『中宗實錄』 卷86, 中宗 32年 12月 19日. 「則尙衣院貂皮貢物 指定民間上納 而其土產出之皮 不合於進上 故必須多捉 到京質納 而價直甚高 故民不勝其苦矣」.

105) 『中宗實錄』 卷88, 中宗 33年 8月 14日. 「外貢雜物上納之時 外方之吏 雖欲納本邑好品 各司下人防納者 非其所備之物 則中間用術 百端點退 外吏不得已積納高價 質諸防納之人 始得納官 是以 納官之物 率皆品惡 殊非任土作貢之意 而防納之人 要素重價 歲益月增 一羊之價 至於縣布七同 一貂皮之直 至於官木四同 一羽之輕 至於官木三十四 他物率皆如此高重」.

106) 『世祖實錄』 卷18, 世祖 5年 11月 10日. 「諭咸吉道觀察使鄭軾曰 本道所進貂鼠皮 國用最緊 然人言 此物不產於南 而令南民採納 每歲遠貿北道 因此失業者有之 然歟」.

107) 박도식, 『朝鮮前期 貢納制 研究』, 혜안출판사, 2011, 212~213쪽.

誅求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sup>108)</sup> 수량을 늘려 징수함으로써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sup>109)</sup>

이처럼 초피 공납의 실상은 산지의 백성들도 초피를 구하기 어려워 공납 수량을 채우기 힘들었고, 진상용으로도 부적합했다. 그리고 국가에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초피를 생산하지 않는 지역까지 분정하는 상황에서 무납과 방납, 수령의 주구를 받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피를 어떻게는 마련해야 하는 평안·함경도지역 백성들은 급기야 여진에게서 초피를 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 2. 수요층 확대와 피 공급의 한계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에 이르면 상류층사이에서 초피복식 착용이 성행하고 수요층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먼저 초피의 수요가 상류층에서부터 확대될 수 있었던 요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초피는 고급모피의 미적 가치를 지녔고 장식적 위세품으로 인식이 높았다. 정부에서 평안·함경도지역 백성들의 초피 공납문제로 공물을 줄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진과의 거래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초피를 사용하는 사치풍속에 원인을 두고 있을 정도였다.<sup>110)</sup>

초피를 사치품이라 여겼던 것은 대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가죽이 아닌 평안·함경도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산지 여건과 희소성 때문이다. 특히 당시에는 왕실과 정3품 당상관 이상만 착용할 수 있었던 衣料로 방한의 실용적인 용도보다는 부의 상징과 장식적 위세품으로써 인식이 더 높았다.

둘째, 초피의 수요가 조선후기에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조선왕조실록』의 사료 상에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보면 이 시

108) 『成宗實錄』 卷52, 成宗 6年 2月 2日. 「國家責貢貂皮於五鎮守令 托以進上 誅求於民」; 『成宗實錄』 卷250, 成宗 22年 2月 8日. 「邊將貪不顧法 非徒市馬 至於貂鼠狼尾土豹鷲羽之類 假稱常貢 鐵物牛馬無所不賣 此剝民資敵之切害」.

109) 『明宗實錄』 卷28, 明宗 17年 8月 2日. 「諫院啓曰 翼善冠貂皮之貢 定於平安道江界府 每年上納 而爲守令者 濫徵加數 民已苦之」.

110) 『成宗實錄』 卷57, 成宗 6年 7月 14日. 「國家雖減貂鼠皮之貢 而弊猶不祛者 俗尙奢侈 服飾必用貂鼠皮」; 『中宗實錄』 卷21, 中宗 9年 10月 13日. 「野人持貂 吾民不惜農牛而易之 又以鐵物者 此無他 我國之所尙在貂故也 中外貴賤 爭尙豐侈 貂日益貴」.

기의 기후적 상황인 소빙기 현상과도 연관 지어 고려해 볼 수 있다.

이태진은<sup>111)</sup> 보온성이 높은 피물들이 같은 시기에 조선·중국 양쪽에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단순히 사치풍조의 결과로만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16세기에는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소빙기 현상이 진행된 시기였고, 여진과의 교역에서 피물의 수요가 높았던 것은 같은 시기에 북미대륙에서 모피상인의 활동이 활발했던 것과 같은 성격의 현상으로 이해했다. 소빙기 기후의 가장 현저한 특색은 기온이 낮아져 선선한 여름이나 한랭한 겨울이 나타나며, 기후 특성상 선선하고 매우 습윤한 시기였다.<sup>112)</sup>

소빙기의 기온 강하는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잦은 실농으로 식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의류와 주거에 보온이 절대적으로 강화되어야 했다. 16세기에 온돌방 보급이 촉진되었으며,<sup>113)</sup> 14세기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와 보급한 목화도 소빙기에 급속도로 보급되었다. 소빙기의 재난으로 보온성 의류의 수요가 늘어난 점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114)</sup> 실제 초피의 수요층이 확대되어 문제시 되고 있다는 사료의 시기를 보면 겨울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계절의 구분 없이 확인된다. 이는 초피가 계절의 구분 없이 사계절 내내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15)</sup>

셋째,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조선에서는 초피의 공급물량을 채우기도 부족했다. 하지만 초피의 수요가 늘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에 가능했다. 즉 수요가 많았더라도 공급원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증가할 수 있는 상황도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후술할 내용이지만 초피를 여진

111) 이태진, 「16세기 국제교역의 발달과 서울 상업의 성쇠」, 『서울상업사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8, 76쪽; 「小氷期(1500-1750)의 天體 現象의 원인-『朝鮮王朝實錄』의 관련 기록 분석-」, 『國史館論叢』 제72집, 1996.

112) 김연옥, 「歷史속의 小氷期」, 『역사학보』 제149권, 역사학회, 1996, 259쪽.

113)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3』, 역사비평사, 2006, 282쪽.

114) 이태진, 「16·17세기 장기 자연재난과 봉당정치의 전개」,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91~94쪽.

115) 『成宗實錄』 卷55, 成宗 6年 5月 12日. 「今觀士大夫之家 日事侈麗 爭相誇美 以其甚者言之 大小宴集 非畫器不用 婦之服飾 無貂裘 羞與爲會 卽此而觀之 習俗之弊 益可想矣」; 『成宗實錄』 卷57, 成宗 6年 7月 14日. 「俗尙奢侈 服飾必用貂鼠皮 朝士階陞四品 則與從三品相混 故必着貂皮耳掩 且毛裘宜於老者 而年少婦女 皆服貂裘 無此則羞與爲會 數十婦女之會 無一不服者」; 『成宗實錄』 卷204, 成宗 18年 6月 2日. 「商賈奴隸之徒服飾 擬於卿大夫 士族之女 非貂裘 不得齒於宴席 奢侈無節 此風不可長也」; 『中宗實錄』 卷29, 中宗 12年 9月 22日. 「富家巨室 迭相矜衒 如衣裘衾席之屬 亦皆以此爲之 鄉閭小會 婦女無貂衣者 恥不肯赴焉」; 『中宗實錄』 卷61, 中宗 23年 4月 14日. 「市魁屠伯 貂加其婦 至於緣履 物價以此翔貴」.

과 무역했던 점을 보면 당시 여진족의 경제적 상황과 환경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초기 여진의 경제구조는 농업보다는 수렵·채집·어로·약탈 등의 경제구조를 형성했었다. 하지만 15세기 중반 농경문화가 여진족에게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농업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이다.<sup>116)</sup> 그들은 농업 발전을 위해 농우·농기구·철제 등을 얻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조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여진과 접하고 있었다. 여진은 조선의 사람·소·말 등을 수시로 약탈해 가기도 했고, 그것을 경제·인적자원으로 삼으려 했다. 그리고 명나라와 조선을 대상으로 특산물인 초피를 상품화하여 교역의 도구로 삼아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데 주력했다.<sup>117)</sup> 즉, 초피 무역으로 공급처 역할을 하며 경제적 이해를 추구했던 여진이 있었기에 조선의 초피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었고 수요증가도 가능했다.

여진은 조선과 초피 밀무역이 성행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자, 조선으로의 來朝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모피 교역을 통해 조선과 여진사이의 전통적인 교린관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sup>118)</sup> 그리고 여진이 淸을 건국하면서 조선은 초피를 사행 시 譯官을 통해서만 무역을 하게 되었고, 효종8년(1657)에 청나라는 초피 무역을 금지했다.<sup>119)</sup>

116) 『成宗實錄』 卷269, 成宗 25年 9月 27日. 「熙止曰 野人惟知射獵 本不事耕稼 聞近年以來頗業耕農 其農器皆出於我國 此必居城底者賣之也」; 여진족을 명대의 중국인들은 建州女眞·海西女眞·野人女眞으로 구분했다. 해서여진과 야인여진은 만주의 북부산림지대에서 수렵과 어로 생활을 주업으로 했고 건주여진은 남부의 평야지대에서 농경생활을 위주로 했지만 낮은 단계였다. 15세기에 이르면서 건주여진은 빠르게 농업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교역을 통해 농경기술을 습득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하고자 했다(김한규,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2004, 545~546쪽; 서병국, 「조선전기 대여진관계사」, 『한국사연구논총』, 한미문화사, 2008, 137~138쪽; 남의현, 「多元的 經濟構造를 통해 본 女眞社會의 特徵-15~17세기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35권, 2012, 233~243쪽; 김순남, 16세기 조선과 野人사이의 모피 교역의 전개, 『한국사연구회』 제152권, 2011, 73~77쪽).

117) 남의현, 앞의 논문, 2012, 238~243쪽.

118) 김순남은 여진이 15세기 중반 성종 재위기간에 총71회의 來朝를 했으나, 중종대에는 중종2년부터 중종10년까지 총 5번 내조사례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실제로 내조는 했으나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겠지만, 생필품을 얻는 방편으로 來朝를 즐겨했던 여진의 상황이 모피 교역을 통해 16세기 들어 변화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김순남, 앞의 논문, 2011, 102~105쪽).

119) 『承政院日記』 仁祖 15年 10月 8日. 「又以尙衣院言啓曰 冬日漸深 寒威猝嚴 御用貂皮半行缺納 譯官崔元立 以大段白絲 爲中朝極禁 不得貿來 此則容有可欺以方 而至如貂皮 則萬無不得之理 而惟知自己之牟利 不念官家之所用 情狀痛惡 此人等以弓角不納 方在囚中 令該曹決罪督納 似不可已 敢啓 傳曰 依啓」; 『承政院日記』 孝宗 8年 11月 1日. 「徐必遠 以尙衣院官員 以提調意啓曰 今十月二十八日 使臣引見時 上使沈之源所啓 往來使行所持禁物 例有搜檢之舉云 今番尙方貿易物件中 有禁物出來之時 若有如此之患 則事甚可慮矣 上曰 禁斷何物耶 之源曰 雲紋大段貂皮等物云矣 上曰 言于尙衣院 自該院處置事 命下矣...雲紋大段 全不舉論 至於貂皮 則非但曾無自彼禁斷之事 一自上年柵門生梗之後 鳳城淸人 雖有居間操縱之弊 貂皮紋段 則別無終始見捉之患 臣斗杓出來之時 亦無此等物種嚴禁之事 而貿易譯官輩 因此衙門禁令 欲廢御供例貿之物 其爲情狀 殊甚可惡 今若不爲貿來 龍袍所用錦段 翼善冠耳掩貂皮 從何辦出乎 切勿稱頌 從前精擇貿來之意 移文副使處 各別嚴飭 次知譯官 何如 傳曰 允」.

넷째, 조선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보면 정부는 초피를 함부로 매매할 수 없는 금물로 정했고, 공급으로 중앙정부의 수요로만 충당하려고 했다. 사료의 부족으로 민간에서의 초피 보유와 유통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초피의 수요층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수요에 부응할 목적으로 유통을 가능하게 했을 매개자의 측면에서 당시 교환경제를 주도했던 도성상인의<sup>120)</sup> 성장과 상업 활동도 연관 지어 살펴볼 필요도 있다.

건국 후 조선 정부는 ‘務本抑末策’에 근간하여 市廛을 거점으로 전국상업을 관장하고 통제하려는 상업정책을 펼치고자했다. 민간부분의 상품유통은 억제하거나 통제되었으며 대외무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당시 15세기 중엽부터 16세기는 농업생산력이 신장되면서 지주들에 의한 토지 집중으로 지주제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었다.<sup>121)</sup> 농민층의 분화로 토지로부터 유리된 농민들이 상공업으로 전업하게 되면서 상업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곡물 시장의 창출로 장시의 신설이 급증하여 상품유통이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유통 경제적 차원에서 조선후기의 사회변화에 비하면 낮은 단계였지만, 15세기 이후부터 지주제의 전개는 국내시장의 발달을 촉진시켜 도성을 중심으로 상업자본을 축적한 상인세력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 16세기 들어 한양의 상품유통이 확대되면서 상인층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고 이들 중 일부가 부를 축적하여 대상인으로 성장했다.<sup>122)</sup>

도성상인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은 한양이 정치·행정·군사의 중심지로 인구가 집중해있는 소비도시이자 부세수취 제도로 전국의 물산이 상품의 형태로 모두 집중되는 상업 도시적 성격에 기반한 것이었다. 부상대고들은 이러한 도성을 기반으로 전국 상권을 장악하고 최대의 상인집단으로 성장하며 주된 상업 활동

120) 조선전기 도성상인의 대표적인 상인집단은 물론 시전상인이었고 工商·行商들도 다소 존재했다. 그러나 정주 점포를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영세 소상인들과 달리 ‘富商大賈’·‘京中富商’·‘京中富商大賈’·‘興販牟利之徒’로 불리는 도성과 전국을 무대로 상업 활동을 주도했던 상인들도 존재했다. 조선전기 사료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부상대고 세력은 이 같은 도성 상인군 가운데 공상과 영세 상인층을 제외한 시전상인·경중부상·경강상인등이 있었다. 경중의 시전과 부상대고층은 그 주요 구성원이 대부분 개성상인 출신으로 자산과 상활동의 규모가 큰 상인들을 지칭하는 개념이었다(박평식, 『조선전기 교환경제와 상인연구』, 지식산업사, 2009, 137~142쪽; 백승철, 「16세기 부상대고의 성장과 상업활동」, 『역사와 현실』 제13권, 한국역사연구회, 1994, 243쪽).

121) 남지대, 「15세기 조선사회와 농민」, 『역사와 현실』 제5권, 한국역사연구회, 1991, 20쪽.

122) 한상권, 「16세기 대중국 사무역의 전개 - 은무역을 중심으로 -」, 『김철준박사회갑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3, 449~450쪽; 백승철, 앞의 논문, 1994, 244~248쪽.

을 納穀, 방납과 같은 정부재정운영과 관련된 부분, 상류층의 사치품 수요를 위한 대외무역 등을 통해 활동했다.<sup>123)</sup>

이와 같이 고가의 사치품이고 귀했던 초피를 거래할 수 있는 재력이나 여건상 자산 활동의 규모가 컸던 富商大賈라고 지칭되던 당시의 대상인들에겐 가능했다. 후술할 부분이지만 상인들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평안·함경도지역의 변경까지 진출하여 여진과 초피를 거래했다. 무엇보다 초피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초피의 공급으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은 분명했다. 이들의 활동은 금물이었던 초피가 점점 민간으로의 유통을 가능하게 했고 점차 확대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다. 초피의 수요층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상인들의 상업 활동을 통해 초피의 유통경로가 더 이상 중앙정부 수요의 공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민간의 사무역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기 시작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15세기 후반부터 수요층이 확대되는 양상은 다음의 사료에서 보여준다.

⑮ 이제 사대부의 집을 보면 날마다 사치를 일삼고 서로 다투어 아름다움을 뽐내는데, 그 중에서 심한 것을 말하자면, 크고 작은 연회에 그림을 그린 그릇이 아니면 쓰지 않고 부녀자의 服飾에 貂裘가 없으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니, 이것으로 보면 풍속의 퇴폐를 더욱 알만합니다.···초피의 장식은 3품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나 모든 銀帶를 하는 자가 거의 다 혼란하게 장식하여 금지하기 어려우므로, 초피의 값이 올라가게 되어 敵에게 이익을 주게 되니, 역시 작은 일이 아닙니다.<sup>124)</sup>

⑯ 풍속이 사치를 숭상하여 복식을 반드시 초서피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朝士로서 官階가 4품에 승진되면 종3품과 서로 어울리므로, 반드시 초피이음을 착용하며, 또 毛裘는 노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나이 젊은 婦女들도 모두 貂裘를 입는다면 이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모이기를 부끄럽게 여겨 수십 명의 婦女들의

123) 박평식, 앞의 책, 2009, 148~149쪽; 백승철, 앞의 논문, 1994, 259~267쪽.

124) 『成宗實錄』 卷55, 成宗 6年 5月 12日. 「今觀士大夫之家 日事侈麗 爭相誇美 以其甚者言之 大小宴集 非畫器不用 婦之服飾 無貂裘 羞與爲會 卽此而觀之 習俗之弊 益可想矣···貂皮之飾 雖限以三品 凡帶銀者 率以爲飾 混淆難禁 致令貂皮價高 敵人資利 亦非細故」.

모임에는 한 사람도 입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피의 값이 오르자 謀利者가 北道에 구름처럼 모여서 사기를 구하여 그치지 않아...<sup>125)</sup>

사료 ⑮·⑯에서 초피이염을 관직 정3품 당상관 이상만 착용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관리들이 초피이염을 착용했다. 또한 노인들이 입는 것으로 여겼던 초구를 사대부 부녀자들이 즐겨 입어 초구가 없으면 모임에 참석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심지어 초피로 만든 上衣가 없으면 門族이 모이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sup>126)</sup> 관리들의 초피의 무분별한 사용이 품계구별에 혼란을 주고 있었으며, 초피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여 상인들이 초피를 구하려고 평안·함경도지역으로 몰려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연산군대에는 초피나 초구를 들이라는 명령이 잦았다.<sup>127)</sup> 상으로 하사하는 데도 절도가 없었고 쉼 안의 궁인들도 사치가 심해 초피로 치마를 만드는 사람까지 있었다.<sup>128)</sup> 그 후 성균관 및 사학 유생들 사이에서도 초피복식 착용이 성행했다. 선비로서의 청렴함과 검소한 풍습이 사라져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를 행한 자들은 과거의 응시를 정지하도록 비판을 받게 된다.<sup>129)</sup>

⑰ 商賈의 아내는 남보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 공공연히 초피를 입으므로, 貴賤의 차등이 혼동되고 존비의 차서가 없어져 교만하고 자궁하여 풍화가 퇴폐해졌다.<sup>130)</sup>

125) 『成宗實錄』 卷57, 成宗 6年 7月 14日. 「俗尙奢侈 服飾必用貂鼠皮 朝士階陞四品 則與從三品相混 故必着貂皮耳掩 且毛裘宜於老者 而年少婦女 皆服貂裘 無此則羞與爲會 數十婦女之會 無一不服者 貂皮價高 謀利者雲集北道 市索無已...」.

126) 『中宗實錄』 卷33, 中宗 13年 6月 7日. 「至如無貂皮上衣者 不敢與於門族之會」.

127) 『燕山君日記』 卷46, 燕山君 10年 12月 25日. 「傳曰 興清樂已習處容舞者 明夕領來 且前日天使所贈貂皮毛長品好 今後每行賀來」; 『燕山君日記』 卷47, 燕山君 8年 12月 19日. 「傳曰 貂皮女裘四領造入」; 『燕山君日記』 卷51, 燕山君 9年 11月 30日. 「傳曰 貂皮斜脚 靑鼠皮腹皮各三百及各色段子裁剪 卽入內」.

128) 『燕山君日記』 卷46, 燕山君 8年 10月 8日. 「命入貂皮六十領 時賞賜無節 宮人競以奢侈相尙至以貂皮爲裙者 貂皮價極踴貴 一領至直縣布十匹」.

129) 『中宗實錄』 卷10, 中宗 4年 11月 10日. 「政院啓曰 成均館及四學儒生 非徒不居館學 不挾冊 美衣服 着貂皮耳掩 騎馬而行 或着白衣草鞋 有同市井之人 見先生并肩而行 又於東堂 專不錄名 士習不美」; 『中宗實錄』 卷12, 中宗 5年 10月 12日. 「且儒者之行 不恥惡衣惡食 但衣敝縵袍而已 今之儒者 蒙貂衣輕無馬則不行 其士習之毀如此 憲府雖痛禁而難制 請如此之類 永永停舉」.

130) 『中宗實錄』 卷17, 中宗 8年 2月 6日. 「...商賈之婦 服美于人 公然被貂 貴賤混等 尊卑失序 驕淫矜誇 而風化頽靡」.

⑱ 풍속이 사치를 좋아하여 기이한 물건을 다투어 귀하게 여기니, 이것이 폐단을 만드는 근원이요 그 매매하는 것은 말류일 뿐입니다. 계급을 한정하여 당상관이 아니면 초피로 이엄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이 서 있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근래 지나친 사치가 풍습이 되어 하류의 賤品도 참람하게 착용하지 않는 자가 없으며, 富家 거실은 서로 자랑하느라고 衣裘, 衾席 따위도 다 이것으로 만들며, 鄉閭의 작은 모임에도 貂衣가 없는 婦女는 부끄러워 가려 하지 않는데...<sup>131)</sup>

⑲ 장사치들 괴수와 백정들 우두머리도 그의 아내에게 초피를 입히고 緣履를 신기고 있습니다.<sup>132)</sup>

⑳ 남들이 보는 곳에서 복식을 꺼리는 것이 없이 버젓이 사대부와 같게 하여 입지 않는 옷이 없고 하지 않는 일이 없으며, 市中の 여자까지도 초피모관을 버젓이 착용하고 저자에 앉아 있는데...<sup>133)</sup>

앞의 사료 ⑰~⑳의 내용은 상인에게까지 초피복식 착용이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여건을 갖춘 상인들이 초피사용을 주도했으며 상류층의 복식문화를 모방하고자 했다. 작은 모임에도 貂衣가 없는 부녀는 부끄러워 가려하지 않았고 서로 자랑하느라 이불과 방석도 만들어 사용했다. 이처럼 상류층에서 상인들까지 광범위한 초피 사용의 선호는 더욱 귀한 의류라는 인식을 가져왔고<sup>134)</sup> 초피 가격이 점차 폭등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다음의 표를 보면 초피의 가격 변화를 알 수 있다.

131) 『中宗實錄』 卷29, 中宗 12年 9月 22日. 「俗尙侈靡 競貴異物 此所由致弊之源 而其爲質買 特其流耳 定爲限級 非堂上官 不得以貂皮爲耳掩 法非不立也 而近來奢泰成習 下流賤品 莫不僭着 富家巨室 迭相矜衒 如衣裘 衾席之屬 亦皆以此爲之 鄉閭小會 婦女無貂衣者 恥不肯赴焉...」.

132) 『中宗實錄』 卷61, 中宗 23年 4月 14日. 「市魁屠伯 貂加其婦 至於緣履」.

133) 『中宗實錄』 卷64, 中宗 23年 12月 18日. 「外人所見處 其所服飾 無所忌憚 公然如士大夫 無不著之衣 無不爲之事 至如市中之女 貂皮毛冠 公然著持 坐於市肆...」.

134) 『中宗實錄』 卷21, 中宗 9年 10月 13日. 「中外貴賤 爭尙豐侈 貂日益貴」.



<표 6> 초 피 가격의 변화(환산 면포가)<sup>135)</sup>

시기	초피 1장당 거래가격	내용	가격 기준
세종 7년(1425) 4월	저화 25長 ≍ 면포 0.8匹	초피 시세	세종 5년 9월 계사 저화 30長 = 면포 1匹
성종 5년(1474) 3월	소 1頭 ≍ 면포 10匹	여진과 거래	성종 12년 5월 무인 소 1頭 = 면포 10匹
연산군 8년(1502) 10월	면포 10匹 <sup>136)</sup>	초피 시세	
중종 11년(1516) 5월	말 1匹 ≍ 면포 500匹	여진과 거래	중종 11년 7월 갑진 말 1匹 = 면포 500匹
중종 33년(1538) 8월	官木 4同 ≍ 면포 200匹	방납	

<표 6>에서 확인되는 초피의 가격변화는 대체로 중종대에 수요층이 확대되는 과정과 비슷하게 초피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선조대에 여염의 천민까지 초피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피의 가격이 평소 4~5배나 비쌌다는 기록에서<sup>137)</sup> 수요층의 확대가 高價의 상품이었음을 확인하게 한다. 이처럼 초피의 수요층이 상류층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되었고 초피 가격이 상승하는 현실이었다. 따라서 조선의 산지에서 초피 물량조달은 물론, 공급에도 한계가 생겼다. 결국 상인들은 초피의 이윤을 목적으로 여진과의 밀무역을 선택하게 되었다.

### 3. 女眞 의 초피 밀무역

135)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사료의 부족으로 초피 시세 이외에는 가장 근접한 시기의 사료에 나온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세종 7년과 연산군 8년 내용을 제외하면 여진과 거래했거나, 방납에 관한 사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여진이 원했던 牛馬의 가격이나 방납의 가격으로 초피 가격을 환산하는 것은 당시의 정확한 가격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피를 여진에서 우마로 교환했던 관행을 감안하면 비슷한 가치를 가졌을 것이다. 이를 면포가로 환산하여 대략적으로 초피의 시기별 가격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초피의 상태나 품질에 대한 것도 배제된 것이다.

136) 『燕山君日記』 卷46, 燕山君 8年 10月 8日 「命入貂皮六十領 時賞賜無節 宮人競以奢侈相尙至以貂皮爲裙者 貂皮價極踴貴 一領至直蘇布十四」. 기록에 궁인들이 초피로 치마를 만드는 사람까지 있었으니 초피 값이 뛰어올라 면포 10필에 달하였다는 기록에서 초피가격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판단이 든다. 이정수의 논문에서도 동년 다음 달인 연산군 8년 11월 1일 기록에서 닭 한 마리와 생선 한 마리 가격이 면포 3~4필이었던 점과 비교하여, 당시 귀한 가죽이었던 것에 비해 초피 가격이 면포 10필에 달하였다는 것을 너무 적은 가격으로 여겼다(이정수, 「조선초기의 물가변동-미곡 이외의 상품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제68집, 국사편찬위원회, 1996, 73쪽).

137) 『宣祖實錄』 卷135, 宣祖 34年 3月 17日. 貂皮 我國不產 而閩閩下賤 無不戴貂 故貂價四五倍於平日矣.

조선에서의 초피 공납실상과 수요층 확대는 초피가 특산물이었던 여진과의 밀무역을 전개하였다. 품질이 좋고 아름다운 초피를 조선에서 얻는 것보다 여진에게서 구해야했으며<sup>138)</sup> 여진사람들은 조선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와 교환 가능한 牛馬·鐵物을 얻기 위해 항상 준비하여 매매하기를 기다렸다.<sup>139)</sup> 이러한 상호간의 목적은 변방에서 밀무역의 성행을 가져왔고 이 과정에 보이는 평안·함경도지역 백성들의 밀무역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貂鼠와 土豹皮는 六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물이나 賦稅를 바칠 때에는 반드시 彼人들에게 바꾸는데, 피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사들여야 하는 절실함을 알기 때문에 그 값으로 牛馬나 鐵物이 아니면 받지를 않습니다.<sup>140)</sup>

② 臣이 遠接使로 평안도에 다녀 올 때에 듣건대, 廢朝에서 貂皮 따위 물건을 변방의 백성에게 많이 分定하였는데 변방의 백성이 얻을 길이 없으므로 반드시 소를 가지고 야인에게서 사왔습니다. 이제껏 옛 습관을 따라 폐해가 된 지 이미 오래이니, 만약 하루아침에 금지하면 아마도 변방의 말썽거리가 있을 듯하므로, 수령이 금지하고 싶으나 수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sup>141)</sup>

사료 ①·②에서 백성들이 초피를 구할 길이 없어 여진과 초피를 밀무역 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진에서는 조선 사람들의 초피의 절실함을 이용해서 그 대가로 반드시 우마·철물을 요구했다. 초피 1장당 소 1두 또는 마 1필로 교환할 정도였다.<sup>142)</sup> 이는 조선에서 요구되는 초피 수요를 반영한 것이면서도 다른 물건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료 ②에서 확인되듯이 연산군은 초피를 평안·함경도지역에 많이 분정했었다. 당시 연산군은 시중의 초

138) 『中宗實錄』 卷21, 中宗 9年 10月 25日. 「今夫貂皮鼠皮 蓋出於極邊 取之甚難 若求美好 必買胡中 易之以牛 勢已難禁」.

139) 『燕山君日記』 卷29, 燕山君 4年 4月 17日. 「且野人等利我國牛馬鐵物 常備貂鼠皮 以求買賣」.

140) 『成宗實錄』 卷250, 成宗 22年 2月 15日. 「貂鼠土豹皮 非六鎭所產 貢賦之時 必質於彼人 彼人知我民求買之切 其直非牛馬鐵物不受」.

141) 『中宗實錄』 卷6, 中宗 3年 8月 16日. 「臣以遠接使 往還平安道時 聞在廢朝 多定貂皮等物于邊氓 邊氓得之無由 必以牛隻 貿易於野人 至今因循 爲弊已久 若一朝禁止 則恐有邊釁 故守令欲禁而未果也」.

142) 『成宗實錄』 卷40, 成宗 5年 3月 1日. 「又不可越入胡地以取之 無以充貢 其價之重 至於以一牛易一貂皮 民不能堪」; 『中宗實錄』 卷25, 中宗 11年 5月 17日. 「兩界毛物進上 有弊 山丁干稱名者或以馬一匹 易貂皮品好者一張」.

피가 품질이 좋지 못해 상의원 관원을 보내 초피 2만령을 사오도록 전교했다. 평안·함경도지역의 대부분의 소를 여진의 초피와 교환해서 백성들은 말을 가지고 말을 가는 상황까지 생겼었다.<sup>143)</sup>

한편, 여진에서 조선의 우마·철물을 이롭게 여겨 침탈하기도 했다. 평안·함경도 지역 백성들은 침탈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강제로 농기와 가마솔을 가지고 초피를 교역했다.<sup>144)</sup> 이는 타의적인 교역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피 밀무역은 관리가 금지하는 것을 피해 밤에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여진인에게 백성들이 사로잡혀 深處로 옮겨 팔리게 되는 우려도 발생했다.<sup>145)</sup>

반면 상인들은 초피의 가격이 점점 오르기 시작하자, 이득을 목적으로 평안·함경도지역으로 몰려들어 여진과 초피를 거래했다. 특히 이 지역의 추운 기후를 이용하여 백성들에게 유용한 물품이었던 면포를<sup>146)</sup> 사용해 매매를 일삼았다.

② 영안도관찰사 성준이 書啓하기를…신이 보건대 本道 사람은 어리석고 미혹하며 멀리 염려하는 것이 없으므로 商賈와 매매할 때에 농사가 조금이라도 잘된 해에는 무명 한 필의 값이 쌀 60두나 70두가 되고 다른 물건도 이와 같은데 家産을 기울여서라도 꺼리지 않고 삽니다.…본도의 軍官 가운데에 興利人이 많이 있는데, 그 派係를 상고하여 벼슬하는 집안의 자제가 아니면 口傳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商賈들이 말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sup>147)</sup>

④ 또 야인 등이 우리나라의 우마와 철물을 이롭게 여겨 항상 초서피를 준비하여 매매하기를 구하는데, 변민들이 또한 侵漁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농기와 가마솔을 가지고 오랑캐와 교역을 합니다. 또 한양에서 興販하는 무리들이 바리바리 면포를 신고 변방 鎭을 두루 횡행하며 철물과 牛隻을 사가지고 通事와 결탁하여 날마다 팔아넘기기를 일삼으니, 비록 어진 수령이라도 역시 능히 금하지 못하

143) 『燕山君日記』 卷60, 燕山君 11年 10月 3日. 「承旨韓恂啓 市裏貂皮品惡 請於兩界質來 傳曰 遣尙衣院二員 質二萬領來 野人貴牛 兩道之牛 盡於質貂 民至有駕馬而耕者」.

144) 『燕山君日記』 卷29, 燕山君 4年 4月 17日. 「且野人等利我國牛馬鐵物 常備貂鼠皮 以求買賣 而邊民亦不堪侵漁之苦 以農器釜鼎交市於虜」.

145) 『中宗實錄』 卷6, 中宗 3年 8月 16日. 「又聞北道人民 饑荒太甚 求鹽海邊 以牛隻反賣於野人 憚官吏禁止 必乘夜以往 因爲野人所擄 轉賣於深處野人云 如此則非徒牛馬 人物亦甚可慮」.

146) 『中宗實錄』 卷55, 中宗 20年 10月 3日. 「今年北道大稔 絁布 民用之最切者」.

147) 『成宗實錄』 卷192, 成宗 17年 6月 30日. 「永安道觀察使成俊書啓曰…臣觀本道人愚惑無遠慮 與商賈通販 年或少稔 絁布一匹直米六七十斗 他物類此 雖傾家買之不憚…本道軍官之中 興利人居多 若考其派係 非衣冠子弟 不許口傳 則商賈之徒不得接跡矣」.

는 현실입니다.148)

㉕ 근년에 興利하는 무리들이 많이 物貨를 싸가지고 北鎭을 두루 다니면서 철물과 우마를 사들여서 오랑캐들의 皮物과 바꾸어 오는 모양이오니...149)

앞의 사료 ㉓·㉔를 보면 상인들은 변경의 군관직도 얻어서 상업 활동을 했다. 그리고 변방 鎭을 다니며 한양에서 가져온 면포를 매매하여 철물과 소를 구입했고, 그것으로 역관과 결탁하여 여진과 초피를 거래했다. 사료 ㉕에서도 物貨를 이용해 우마·철물을 사서 여진의 피물과 교환했다.

한편, 평안·함경도지역에서 상인들의 상업 활동을 곡물 납부인 納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평안·함경도지역의 흉황과 기근의 반복 때문에 비변을 위한 군사확보책으로 納穀을 실시했었다. 곡물을 평안·함경도지역으로 운송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평안·함경도지역에 곡물을 비축하고 있던 곡물주를 대상으로 이 지역의 주현에 곡물을 납입하게 하여 軍資를 보충하고 그 대가를 다른 지역의 곡물로 지급했다. 그러나 대가를 반드시 곡물로만 지급하지 않고 綿布·銅鐵·魚箭등으로도 지급했기 때문에 납곡자들은 잉여 곡물을 처분하거나 납곡 과정에서 이익을 늘릴 수 있던 좋은 기회였다. 주로 평안·함경도지역 출신의 관인들, 이 지방의 농장을 소유한 중앙관료, 특권세력인 왕실에서 주체가 되어 참여했다. 하지만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보다 많은 군사확보를 위해 상인에게도 허용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를 적극 활용했었다.150)

중종대에는 정부에서 상인들에게 함경도 지역의 관청에 곡물을 납부하는 대신 채은권을 부여한 採銀納粟도 실시했다. 採銀은 국내 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법으로 일관되게 국가에서 통제했었다. 그러나 연산군대 鉛銀分離術이 개발되면서 함경도 단천에서 은광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불법 채은이 성행했다. 은을 이용한 부상대고들의 사무역도 성행하자 이를 통제하고, 은 생산의 국가적 과

148) 『燕山君日記』 卷29, 燕山君 4年 4月 17日. 「且野人等利我國牛馬鐵物 常備貂鼠皮 以求買賣 而邊民亦不堪侵漁之苦 以農器釜鼎交市於虜 又有京中興販之徒 馱載縣布 周行邊鎭 質備鐵物牛隻 交結通事 日事和賣 雖賢守令亦不能禁」.

149) 『燕山君日記』 卷29, 燕山君 4年 4月 21日. 「近年興利之徒多齎物貨 周行北鎭 質鐵物牛馬 以市虜人皮物...」.

150) 박평식, 앞의 책, 2009, 281~286쪽.

악의 시도와 함께 함경도 재정을 보충할 방안으로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sup>151)</sup>

㉔ 회수가 아뢰기를 요즈음 듣건대, 北道에서 피물을 무역하느라 우리나라의 철물이 모두 彼地로 넘어간다 합니다. 예전에는 胡人の 화살은 다 鹿角으로 축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 쇠축을 쓰니, 철물이 彼地로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물로 皮物을 사서 宰相이나 벼들이 청하는 것을 채우거나 私利를 꾀하려고 하기 때문이니, 朝官이 착용하는 초서피를 일체 금지 하소서…국가에서는 銀을 캐서 곡식을 사려고 商賈를 보내도록 허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商賈가 면포로 백성의 곡식을 사는데 그곳 백성은 면포를 탐내어 저장해 두었던 곡식을 죄다 털어서 바꿉니다. 이 때문에 商賈가 五鎭까지 깊이 들어가므로 금하는 물건이 彼地로 많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함경도에서 은을 캐는 것은 당초에 軍資에 채우려고 한 것이었으나, 사들이는 곡식이 다 백성의 곡식이니 은을 캐더라도 보탬이 없다…표방이 아뢰기를, 단천에서 은을 캐는 까닭에 철물이 彼地에 많이 들어가고, 은도 중국에 많이 들어가고, 백성 또한 저장했던 곡식을 죄다 쓰게 되니, 이것이 세 가지 큰 폐단입니다.<sup>152)</sup>

사료 ㉔에서 상인들은 함경도 백성들에게 면포를 매매하여 얻은 곡식으로 관청에 납부했다. 사실 상인들 입장에서는 함경도까지 많은 곡물을 운송해 가서 관청에 납부하는 것은 당시 교통사정이나 비용을 고려했을 때, 그 지방 곡물주가 아니면 이윤을 많이 남기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백성들의 곡식으로 납곡하고 채운권을 얻었던 것이다. 결국 받아들이는 곡물이 상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

151) 『中宗實錄』 卷21, 中宗 10年 3月 15日. 「採銀納粟之法 觀其本意 則欲納粟於本道也 今聞 採銀者持縣布入歸 質本道穀食以納之 請依事日本意 爲之;」 『中宗實錄』 卷25, 中宗 11年 5月 29日. 「御朝講 執義金楊震正言朴稷論前事 稷又曰 端川採銀 爲補軍資也 然其質銀者 必馱載綿布而歸 民出官糶 以質其布 若然則寧以縣布 輸入於其地以質穀也 不必採銀 今赴京之人 多齎銀兩 中原人每稱銀之品好者曰 端川銀 幸復貢銀 則其害豈可勝言 臣意以爲不當採也 上曰 非不知此弊 但咸鏡道軍資不足 故欲採銀質穀耳 領事申用漑曰 採銀質穀 以補軍資 不獲已也 但挾銀入中原事 不可勝禁 恐有後弊;」 박평식, 앞의 책, 2009, 172~174쪽.

152) 『中宗實錄』 卷25, 中宗 11年 6月 1日. 「希壽曰 近聞 北道以皮物貿易之 故我國鐵物盡入彼地 古則胡人之箭 皆以鹿角爲鏃 今則皆用鐵鏃 鐵物之多入彼地 從可知矣 此必將以鐵物質皮物 以塞宰相及朋友之請 或營己私故也 朝官所着貂鼠皮 一切禁斷…國家以採銀質穀之故 許遣商賈 然商賈以縣布質民穀 其地之民貪於綿布 罄盡所儲之穀以易之 以此 商賈深入五鎭 禁物多入於彼地矣 上曰 咸鏡道採銀 初欲補軍資 然所質之穀 皆民之穀 雖採銀 無益矣…表憑曰 以端川採銀之故 鐵物多入於彼地 銀亦多入於中原 民且盡耗所儲之穀 此 三大弊也」.

라 백성들의 곡식이여서 은을 캐더라도 군자를 채우는데 효과가 없었다. 더군다나 이를 빌미로 상인들이 백성들에게 면포를 매매하며 곡물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五鎭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여진에게 철물을 팔아 초피까지 구했다. 즉 상인들에게 함경도 단천의 은 채굴과 초피를 얻는 二重이익을 확보하는 길만 열어주게 된 셈이었다.

16세기에 이르러 銀은 중국산 사치품 수입에 따른 대중국 사무역의 결제수단이었고 부상대고들은 이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초피를 구하려 갈 수 있는 길이 더욱 열린 상황에서 은과 더불어 二重이익을 보장하는 한 쉽게 중단되지 않았다. 부상대고들의 채은권 확보로 은을 매개로한 대중국 사무역의 발달을 가져왔고 국내 은의 고갈과 銀價의 등귀를 초래했다.<sup>153)</sup> 따라서 함경도로 들어가는 부상대고들은 모두가 은을 캐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하며 부상대고들의 채은납속을 정지하기를 청했다.<sup>154)</sup>

초피의 거래가 중국과의 대외무역 부분으로도 확대되어 상인들은 북경으로 가는 사신들의 家奴로 위장해 초피를 중국에 매매하려다 적발됐었다.<sup>155)</sup> 또한 북경으로 가는 과정에 遼陽을 경유하게 되어 있는데, 명나라의 요동도지휘사가 요양의 城馬驛에서 富戶들의 사무역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한 사료에도 초피를 무역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156)</sup> 이는 권력층과의 결탁도 있었기에 당시 불법이었던 초피 무역도 가능했다.

153) 한상권, 앞의 논문, 1983, 460~463쪽; 박평식, 앞의 책, 2009, 174~175쪽.

154) 『中宗實錄』 卷75, 中宗 28年 6月 24日. 「國禁雖緊 赴京之行 無不齎銀 富商大賈入咸鏡道者 皆以採銀爲事」; 『中宗實錄』 卷75, 中宗 28年 7月 5日. 「且採銀納穀事 今已判下 臣等之意 恐無大補於國 利先歸於富商大賈之家 所採之銀 盡入於上國 則後日之害 何可勝言 況商賈等 雖大富之人 豈得自京持穀而去 必質於咸鏡之穀 愚民悅商賈所持之物 傾其儲 而盡賣於商賈 而納官 則雖豐年 豈無啼飢之弊 利源一開 末流之弊 將不可救 請停之」.

155) 『世宗實錄』 卷22, 世宗 5年 10月 18日. 「憲府啓曰 工曹參議李揚赴京時 詳定外所齎物已見者 苧麻布共四十四匹 貂皮六十領 又以商賈人孫錫冒名 爲己奴率行 錫所齎苧麻布共二百三十七匹貂皮二百餘領人蔘十二斤眞珠二兩 又以留後司商賈人朴獨大亦冒名爲奴 所齎物又頗多」.

156) 『世宗實錄』 卷86, 세종 21年 9月 6日. 「遼東都指揮使司禁約云 照得 洪武永樂年間 朝鮮國差人赴京進貢方物等項 經由本司 因是遼陽在城馬驛有達子野人女眞往來朝貢 絡繹不絕 尤恐混雜 年以來 在於城外 蓋造房屋一所 周圍墻垣嚴密 委官提督老軍人等看守 專令朝鮮國使臣停歇 關支糧草及宴待支應 行之年久 體知得有等富戶勢要之人 因見使客人等到來 圖利肥己 擔背綾羅段布等物 到彼易換 蔘布貂鼠等件 不肯兩便交易 却乃鼠竊狗偷…」.

## IV. 貂皮 密貿易의 弊端과 對策

### 1. 초피 밀무역의 폐단

초피 밀무역이 성행하면서 조선에서는 여러 폐단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여진지역으로 우마·철물의 지속적인 유출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는 내용은 아래의 사료와 같다.

⑳ 兵은 農에 의지하고 농은 반드시 소가 있어야 되니, 소는 진실로 兵農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야인은 초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백성이 농우를 아끼지 않고서 이것과 바꾸거나 또 철물로 바꾸기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피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중앙과 지방과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모두 지나치게 사치를 숭상하기 때문에 초피는 날로 더욱 귀하게 되고 우리 백성의 소와 철은 모두 저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소는 농사를 여유 있게 하는 것이요, 철물은 兵器를 만들어 병력을 돕게 되는 것이니, 몇 해 뒤에는 아무리 좋은 계책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sup>157)</sup>

사료 ㉑에서 여진과 초피 밀무역의 수단으로 소와 철물로 교환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들이 귀천 없이 초피를 선호해서 생겨난 결과라고 했다. 소는 兵農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소와 철물이 여진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는 농사에 도움이 될 것이고 철물은 병기를 만들어 병력을 돕게 되는 것이니 몇 년 후에는 여진을 대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여진의 화살촉은 예전

157) 『中宗實錄』 卷21, 中宗 9年 10月 13日. 「兵倚於農 而農必以牛 牛固兵農之最重也 野人持貂 吾民不惜農牛而易之 又以鐵物者 此無他 我國之所尚在貂故也 中外貴賤 爭尚豐侈 貂日益貴 而吾民之牛鐵 盡歸於彼 牛以厚其農 鐵以利其兵 數年之後 則雖有善計者 末如之何矣」.

에는 삐로 제작했었는데, 지금은 모두 쇠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철물로 초피를 교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sup>158)</sup> 초피로 인한 철물의 유출을 변경지역의 군사적 위험까지 초래하는 상황으로 이해했다.

전근대사회에서 농업과 국방이 지니는 역할과 위치는 실로 중요한 것이었다. 국가산업의 가장 밑거름이었던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力畜과 다양한 농구의 개발 및 사용은 농업생산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노동수단이였다.<sup>159)</sup> 馬 역시 군사·교통·무역품·농업경작용으로 중요하게 이용되어 馬政에 중요한 자원이었다.<sup>160)</sup> 그리고 철물은 농기구를 제조할 때도 사용했지만 무엇보다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軍器를 제조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했다. 외방에서 제련하는 철물은 전적으로 軍器監에 맡겨서 매달 정해놓고 사용했던 수효 이외에 함부로 허비하지 못하도록 했다.<sup>161)</sup> 초피와 마찬가지로 철물·우마·군기류도 潛賣가 금지된 물건으로 이를 어길시 교형에 처한다는 조항을 볼 때, 중요한 자원임을 하는 강조하는 것이었다.<sup>162)</sup> 결과적으로 조선에서는 다량의 우마·철물의 유출로 농업에 지장을 초래했고 말의 수가 줄어들어 국경 군사력의 저하를 가져왔다.<sup>163)</sup> 반면 여진은 초피를 이용해 그들의 성장 기반에 중요한 자원을 확보했다.

둘째, 수령과 변장들도 밀무역에 가담했다. 평안·함경도지역에 부임하면 초피의 부락과 簡牘이 모여들었고 초피 이득을 탐하여 백성들에게 과다징수하며 주구와 탐오를 일삼았다.<sup>164)</sup> 이것은 초피 공납과도 연결되는 문제였으며 결국 백성들이 유랑을 하게 되고 군민수가 줄어 국경 防備에 문제가 발생했다.

수령들은 백성들이 초피를 얻지 못해 여진과 거래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 하

158) 『成宗實錄』 卷57, 成宗 6年 7月 14日. 「貂皮價高 謀利者雲集北道 市索無已 至以牛馬鐵物買之 野人箭鏃 昔皆用骨 今則皆以鐵爲之 良由我國人用鐵 換皮之故也」; 『中宗實錄』 卷27, 中宗 12年 3月 8日. 「野人以鐵物爲貴 故邊將率以鐵物 質買貂鼠皮 至於農鋤箭鏃 無所不用 故彼人箭鏃 今皆以鐵爲之 誠非細故」.

159) 이호철, 「농업과 농업기술」, 『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2003, 108~111쪽.

160) 남도영, 「馬政」, 『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2003, 552쪽.

161) 『太祖實錄』 卷15, 太祖 7年 9月 12日. 「外方吹鍊鐵物 全委軍器監 其原定月課數目外 毋得濫費」.

162) 『經國大典』 刑典 禁制. 「潛賣禁物者 闊細布綵紋席厚紙貂皮土豹皮海獺皮之類 兩界浦所及客館賣者亦禁下同 杖一百徒三年 重者 鐵物牛馬金銀珠玉寶石焰焰軍器之類 絞」.

163) 『明宗實錄』 卷33, 明宗 21年 10月 24日. 「又胡人之持馬與貂者 率皆索牛 故奪民牛隻 略不爲難 田多荒蕪 牛利縮民 甚憫焉」; 『中宗實錄』 卷5, 中宗 3年 2月 23日. 「民特一牛 換一貂皮 牛馬幾盡 往時騎馬軍士 可千餘名 今則僅有四五十名 雖有邊警 將何以扞禦」.

164) 『中宗實錄』 卷29, 中宗 12年 9月 22日. 「鄉閭小會 婦女無貂衣者 恥不肯赴焉 其所從出 則不由乎他 特在乎兩界而已 由是 每有一人 除拜鎮邑 其來也 囑托壘集 及其既赴也 簡牘填委 一有不及 嫌責隨至 爲鎮將者 非但取以自私」.



지만 국가의 초피 확보와 직결되어 있었고 공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령 또한 중죄를 얻을 수 있어 금지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했다.<sup>165)</sup> 또한 초피를 常貢이라는 명목으로 백성에게 주구를 일삼거나 징수하여 민폐가 많았다.<sup>166)</sup> 邊將들도 평안도의 만포진에서 마음대로 關市를 열어 우마와 철물로 여진과 초피 거래를 했고, 철물로 초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호미나 화살촉까지 사용했다.<sup>167)</sup> 백성들의 鹽粟·우마·철물을 침탈하여 여진과 매매를 일삼았고 서로 장사하도록 허가하여 稅를 거두는 사례까지 있었다.<sup>168)</sup> 이러한 현상은 변장들까지 초피 밀무역에 가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이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평안·함경도지역 백성들은 죽음을 감내하면서까지 여진에게서 초피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평안도와 함경도지역은 북방 변경지역에 위치해 군사적 방비가 중요했던 備邊 지역이었다. 두 지역의 백성들은 군역에 防守하는 부담이 심했다. 평안도는 중국과 인접하여 명나라와의 외교관계에서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迎送의 부담도 가중되었던 상황이었다. 사신들이 부경할 때 평안도의 군사들이 호송을 담당해야 했으며 성종대 이후로는 영송의 폐단이 극심했다.<sup>169)</sup> 함경도 역시 여진을 방어하기 위해 강을 따라 요새에 鎭을 설치했고, 六鎭의 군사들도 番을 서느라 갑옷을 벗을 때가 없이 고단했을 정도였다.<sup>170)</sup>

이처럼 평안·함경도지역의 척박한 환경, 과중한 방수와 부역, 신세포의 변질로 덧붙여진 戶布의 납부, 초피로 인한 수령 변장들의 수탈과 공납은 두 지역 백성

165) 『中宗實錄』 卷6, 中宗 3年 8月 16日. 「廢朝時皮物 必求於野人 不得則守令亦被重罪 雖知其弊而不能禁止」.

166) 『成宗實錄』 卷52, 成宗 6年 2月 2日. 「國家責貢貂皮於五鎭守令 托以進上 誅求於民 而貂皮產於野人之地 故或以農器或以農牛換之 實是資敵」; 『中宗實錄』 卷26, 中宗 11年 9月 26日. 「江界判官禹賜範 以貂鼠皮 分徵於民 民弊甚多」; 『明宗實錄』 卷28, 明宗 17年 8月 2日. 「諫院啓曰 翼善冠貂皮之貢 定於平安道江界府 每年上納 而爲守令者 濫徵加數 民已苦之」.

167) 『中宗實錄』 卷21, 中宗 9年 10月 13日. 「平安道滿浦鎭 館待三衛野人 自甲子年 邊將擅開關市 國人持牛馬鐵器 絡繹輳集 貽害無窮 尤可痛禁」; 『中宗實錄』 卷27, 中宗 12年 3月 8日. 「野人以鐵物爲貴 故邊將率以鐵物 質買貂鼠皮 至於農鋤箭鏃 無所不用」.

168) 『中宗實錄』 卷29, 中宗 12年 9月 22日. 「爲鎭將者 非但取以自私 困於徵索 有不能自己 侵漁百端 或以鹽粟 或以牛馬鐵物 日事質買 唯恐或後 至有許令互市 而陰收其稅者 竭邊民之力 輸國家禁物 以資野人 無有窮已 豈不痛哉」.

169) 『成宗實錄』 卷14, 成宗 3年 1月 15日. 「平安一道 西連上國 北接野人 實我國之門戶也 國家輕繇薄賦 撫恤軍民 蓋亦至矣 然赴京使臣之行 騎載護送軍馬 受弊不貲」; 김순남, 「15세기 중반~16세기 조선 북방 軍役의 폐단과 軍額감소」, 『조선시대사학보』 제16권, 2012, 49~51쪽.

170) 『成宗實錄』 卷192, 成宗 17年 6月 30日. 「臣觀六鎭軍士當番戍他鎭 下番戍本鎭 哨望巡邏無時解甲 以此軍士日益凋殘」.

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고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상의원으로의 초피공납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유랑을 선택하고 버려지는 고을이 생겼다. 內地로 옮겨오기 때문에 강계는 비다시피 되었다. 갑산과 삼수에서도 백성들이 떠나자 軍民의 수가 줄어들어 변방 방비의 어려움이 발생했다.<sup>171)</sup>

셋째, 여진과 초피 무역이 성행하면서 변장들이 반대로 여진인들에게 초피를 억매하거나 바치도록 주구했다. 이에 따라 여진에 대한 회유책에 어긋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㉔ 상이 이르기를, 지금 함경도 병사의 장계를 보건대, 潼關僉使 도서린이 野人들을 침해하여 毛物을 사들여 彼人들에게 원망이 생기게 하였으니 이는 중한 죄로 다스려야 한다.…대저 근래에 변장들이 생계를 경영하고 이익을 추구하느라 모물을 徵收하여 貪汚하다는 기롱을 초래하고 변방의 사단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큰 폐단이므로 貂皮를 무역하지 말도록 신이 일찍이 누차 아뢰었던 것인데, 요사이의 풍속이 날로 더욱 사치스러워 서로 초피를 상품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sup>172)</sup>

사료 ㉔에서 동관첨사 도서린이 여진인들을 침해해서 초피를 사들여 그들로 하여금 원망을 품게 했으니, 중중은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변장들이 초피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징수하고 탐오하여 변방에 사단을 조성했던 것이다. 초피를 무역하지 말도록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서로 초피를 사용하고자 하는 풍속 때문에 생긴 결과라 비판했다.

171) 『中宗實錄』 卷87, 中宗 33年 5月 16日. 「御夕講 侍講官李彦迪曰 兩界人民困弊 流移內地 故如江界 則殆爲空曠 以尙衣院貂皮之責 不堪其苦 流亡相繼 而將棄厥邑矣 命與大臣 詳度蘇復 特進官曹潤孫曰 甲山貂皮 色黃而毛厚 不合於進上 然以其土產捧之矣 且近年以來 土產亦無 故質於深處野人而納之 如甲山三水 居民以此流移 殆將空曠 雖其色惡 尙衣院料弊而量捧可也」; 『中宗實錄』 卷94, 中宗 35年 11月 3日. 「咸鏡道節度使閔齊仁狀啓曰 臣在行營 聞甲山三水兩邑 人物不得安接 日漸逃移 非徒風土荒薄 晚耕早霜 專由毛物進上 故考其兩邑軍民時存逃亡數 則甲山府及境內各鎮堡居民 竝計戶首 時存二百七十名 逃亡七十七名 保人時存四百八十六名 各年逃亡五百五十九名…以如此數少人民 許多毛物 每年分定 勢固難支 國用則以土產猶可封 進上則土產毛薄 不合封進 前日交通野人之弊 亦皆憑此而始 營私漸恣 故今則嚴明國法 不得如前通質 官吏等責納無計 毛物闕處 卜定價布 或他餘毛物懲送 上京質納 故逢此役者 盡賣財產 赤立嗷嗷 無財產者 棄家逃避 士兵因此漸少 脫有事變 誰與守禦 至爲可慮…但兩邑亦必邊方初面 如此群虜逼居之時 軍民逃散 境內空虛 誠非細事 朝廷所共虞慮 而閭閻小臣 何敢有所擬議 但以目覩 陳弊如右云」.

172) 『中宗實錄』 卷44, 中宗 17年 4月 13日. 「上曰 今觀咸鏡道兵使狀啓 則潼關僉使都瑞麟侵虐野人 質買毛物 至使彼人生怨 此可重治也…大抵 近來邊將 營生求利 徵毛物 以招貪黷之譏 階邊圉之弊 此甚巨弊也 故勿質貂皮事 臣曾累啓 近聞 風俗日益奢侈 至如貂皮 爭用極品 故如此耳」.

조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여진과 접해 있어 북방정책에서 여진의 침탈이 있을 시에는 강경책으로, 한편으론 조선에 來朝와 조공을 근본으로 상하관계를 유지하는 교린정책의 회유책을 시도했다.<sup>173)</sup> 세종대 六鎭을 설치한 이후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들을 성 밑에 그대로 살도록 하고 내조와 관직을 수여하며 藩籬로 삼아 城底野人이라 지칭했다. 조선의 보호를 받으며 다른 여진족의 상황을 보고하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도록 했던 것이다.<sup>174)</sup> 즉, 두만강유역을 중심으로 여진에 대한 번리를 구축하며 변경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변장들은 경흥의 성저야인들에게 초피를 함부로 징수하여 원망을 품게 해 중중은 옹지 못한 처사라고 추문을 내렸다.<sup>175)</sup> 여진인들이 변방에 오면 초피를 바치게 주구하여 내조를 꺼리게 만들고 반란을 품는 기회를 노리도록 제공했다.<sup>176)</sup> 또한 온성 藩胡들에게 흑초피를 징수하여 제때에 납입하지 않으면 형장을 가하여 여러 해 동안 귀화한 번호들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게 했다.<sup>177)</sup>

이처럼 국가의 북방정책은 변방의 안정화가 목표였을 만큼 여진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게 했지만 변장들의 탐욕은 여진인들에게까지 초피를 징수하며 폐단을 조성했다.

넷째, 초피의 이득으로 관직의 청탁용도에 사용했다. 초피 밀무역을 일삼거나 백성과 여진인들에게 주구하여 징수한 초피는 뇌물로 이용하기에 높은 값어치를 지녔다. 당시 무관들이 뇌물을 이용한 폐풍에 대해 史官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173) 김구진, 「조선시대 女眞에 대한 정책」, 『백산학보』 제88호, 2010, 287~296쪽.

174) 압록강 주변은 중국과 여진문제에 있어서 마찰이 생길 것을 염려했었다. 세종대 여진에 대한 受職정책은 6鎭설치 후 두만강 유역에 확대되었고 번리 인구도 급증했다(한성주, 「조선의 對女眞關係와 6鎭지역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 제49집, 2014, 8~13쪽).

175) 『中宗實錄』 卷57, 中宗 21年 11月 29日. 「但慶興野人等供饋後所訴 乃鎭將等進上數外貂皮 濫取等事也 在前 邊將少失則禽獸之心 例生怨望…傳曰 自祖宗朝 厚待野人 爲其藩籬也 近來爲邊將者 其於待接 不致款厚 而有或輕易爲之 至於上來驛路 亦不趁時護送 遂使懷怨 此甚不可 故其祿俸之直 緜布 已令戶曹 加磨鍊給之矣 今禮曹 以其進告之言來啓曰 不可以禽獸之言 搖動邊將 此議似當然聞邊將貪污之事 不可不推問」.

176) 『中宗實錄』 卷90, 中宗 34年 5月 8日. 「胡人之來邊 責納貂皮 誅求無厭 其怨益增 不樂來朝 惟思竊發」.

177) 『宣祖實錄』 卷55, 宣祖 27年 9月 16日. 「司憲府啓曰 六鎭藩胡 惟穩城最爲歸順 今者此胡亦叛 此由邊將守令 貪虐無狀 積失其心所致 而前府使田鳳 貪虐最甚 以糶麥給通事 分與藩胡 每一斗徵黑貂一令 坐衙之時 先掛品好貂皮於前庭 見樣責納 若不趁納 則捉致藩胡 嚴加刑杖 至使積年歸順之胡 一朝皆叛 罪犯極重 而尙保官爵」.

㉔ 요즘 武班사람들은 재상들을 잘 섬겨 북방에서는 초피를, 남방에서는 細布를, 서방에서는 細紬를 바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많은 선물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자는 의당 못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이면 온갖 수단을 다해 보내려 하고 死地이면 면해 주고 있습니다…사신은 논한다…한번 재상의 추천을 받으면 당장에 超擢되기 때문에 무반 사람들은 그 폐풍을 인연하여 재상들에 붙어 출세할 계책으로 삼고 재상이 된 자는 많은 뇌물을 탐하여 市恩하는 곳으로 삼으려 하였다. 따라서 권관, 만호, 첨사 등에도 모두 定價가 있는데, 하물며 수령, 부사, 목사의 직임과 수사, 병사의 직에 있어서이겠는가. 그러므로 수령과 말에 뇌물을 가득 실어 공공연히 보낸다. 초서에게 가족이 있음으로 해서 북쪽 변방의 병졸들이 고달프고…(178)

사료 ㉔에서 재상의 추천을 받으면 바로 초탁되었던 점을 이용했다. 이에 따라 평안·함경도지역의 무반들은 초피를 재상들에게 보냈다. 재상들은 좋은 자리이면 수단을 다해 보내 주려했고 死地이면 면해 주었다. 특히 무반들은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위해 국경에서 가장 먼저 수비해야 할 임무를 가진 중요한 직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험한 곳을 면하려 했다.

수령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높은 사람을 잘 섬기면 칭찬이 대단했고 그렇지 않으면 비방이 따랐으며 감사의 殿最에도 좌우되었다. 때문에 재상의 반열에 있는 자들은 초피를 많이 요구해서 수령들도 섬기기에 급급했다. 수령들은 초피를 민간에 독촉했고 백성들은 지탱하지 못해 잇달아 유망했으며, 성저야인에게까지 징수했다.(179)

## 2. 정부의 대응책 한계

178) 『明宗實錄』 卷16, 明宗 9年 6月 9日. 「今者武班之人 善事宰相 北方則事之以貂皮 南方則事之以細布 西方則事之以細紬 平日既受其厚贈 則其所以欲報其恩者 宜無所不至 是故 好地則百計送之 死地則百計免之…史臣曰…而一被吹噓 立見超擢 故武班之人 因緣攀附 擬爲資身之策 爲宰相者利其厚賂 圖爲市恩之地 故雖權管萬戶僉使之類 皆有定價 況於守令府牧使之任乎 又況於水使兵使之職乎 是以輦寶馱財 公然行貨 貂鼠有皮 而北邊之卒困矣…」.

179) 『明宗實錄』 卷4, 明宗 1年 11月 6日. 「大抵今時守令 若善於事人 則譽言日至 不然則毀謗隨之 監司之殿最 亦由於此」; 『明宗實錄』 卷10, 明宗 5年 1月 29日. 「今者居宰相之列者 多索貂鼠之皮 爲守令者 急於善事 責質民間 迫於星火 所許之價至少 備納之物倍蓰 小民不支 相繼流亡 猶且徵斂於城底胡人 不知其厭 彼胡人 非我國之民 而尙不勝其苦 況我國之民 困瘁之狀 何可勝言」.

국초부터 정부는 초피산지의 다른 공물을 감하여 주거나, 초피산지를 발견하게 되면 내수소에 소속시키지 않고 관에 소속시켜 국용에 대비했다. 그만큼 제한된 산지의 여건과 담비의 특성상 많은 수량을 얻기가 쉽지 않았고, 안정적 확보가 요구되는 공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피의 공납폐단과 수요층의 확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밀무역이 성행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초피공납을 감면하는 정책과 초피복식 착용 금지 및 초피 밀무역 금령을 내리는 정책을 시행했다.

### 1) 초피공납 감면

정부는 공납 문제와 관련하여 초피공납을 감면 시켜주는 방법을 여러 차례 시행했다. 초피는 왕의 의복에 사용되는 재료여서 다른 공물에 비해 쉽게 감면되었던 공물은 아니었다.<sup>180)</sup> 하지만 담당지역 백성과 관리들이 초피 밀무역의 폐단을 호소하기 시작하자, 공납 감면을 시행했고 변방의 민생안정을 위해 밀무역을 근절하고자 했다. 초피공납 감면을 수차례 반복했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15~16세기 초 공납 감면 사항<sup>181)</sup>

시기	초피공납 감면 논의내용	감면 사항	
		평안도	함경도(영안도)
성종 5년 (1474) 3월 1일	영안도 甲山府 백성들이 을유년(1465)에 정한 공안에 초피 115장에서 65장 더해져 여진과 무역하는 상에 대해 논의.		甲山府에 加定한 초피 65장 감함.
성종 5년 (1474) 3월 17일	內帑에 초피가 많이 있으니 감하도록 호조에 전교함.	평안·함경도지역의 여러 군·현 5년 동안 한정하여 1/3 감함.	
성종 6년 (1475) 2월 8일	建州衛 여진이 평안도 벽동, 창성 등지 변경을 침입하여 호조와 병조에서 평안도를 소복할 조목을 의논하여 아뢰.	3년 동안 감함.	

180) 『世宗實錄』 卷120, 世宗 30年 6月 22日. 「甲山所貢獬鼠皮則進上服御之物 阿羊鹿角及皮 他處所不產 用度最切 竝不可蠲減」.

시기	초피공납 감면 논의내용	감면 사항	
		평안도	함경도(영안도)
성종 6년 (1475) 2월 18일	五鎭 백성들이 생산되지 않는 초피를 여진과 무역하니 면제를 청했던 上言 논의함. 該曹는 상정된 것을 쉽게 고치기가 불가하다했으니 성종은 없애는 것이 옳다 여겨 논의할 것을 명함(성종6년 2월 2일).		영안도와 六鎭 15년 동안 임시 면제.
성종 8년 (1477) 6월 24일		강계·위원·이산·벽동·창성 등 민간이 蘇復할 때까지 온전히 면제함.	
성종 16년 (1485) 7월 6일	승정원에서 영안도에서 바치는 초피를 본도의 田荒이 심해 임시로 공납 면제를 해주길 청함.		사용하는 곳이 많아 감하지 못하도록 전교함.
성종 20년 (1489) 2월 28일	特進官 이숙기가 영안도 五鎭에서 여진과 무역하니 內地로 옮기길 청함(성종 20년 2월 20일). 영안도 관찰사 이봉에게 五鎭에서 갓출 수 있는지, 내지로 옮겨도 되는지 가능 여부를 馳啓함.		호조에 전지하여 五鎭 초피 공납 영구히 감면 여부를 의논하도록 명함.
성종 20년 (1489) 7월 1일	掌令 안윤손이 五鎭의 초피 공납을 다시 감해줄 것을 청함. 이봉의 啓本에서 內地의 초피는 진상하기에 부적합하여 반드시 여진과 무역하고 있다 함(성종20년 5월 30일).		호조에서 五鎭 초피 공납을 옮겨 배정하지 말고 공안에 따라 상납하도록 하여 그대로 따름.
성종 22년 (1491) 2월 25일	영안북도 절도사 성준이 六鎭에서 여진과 무역하니 1~2년 동안 덜어주기를 청함(성종22년 2월 15일). 호조 판서가 평안·함경도지역의 초피 공납 수량은 많지 않아 감하면 국용이 부족하고 六鎭은 생산되지 않으니 감할 만하다함.	여러 군·현 감하여 주지 않음. 六鎭만 몇 해를 기한해서 반으로 감함.	
중종 11년 (1516) 5월 21일	형조 판서 이장곤이 평안·함경도지역에서 초피 진상 폐단을 아뢰자 좌의정 김응기가 상의원 提調였을 때 저축된 毛物이 많았으니 1~2년 한하여 견감해줄 것을 요청(중종11년 5월 17일).	상의원의 상황을 보고 견감할 만하면 하겠다하고(중종11년 5월 17일) 몇 해를 한해서 견감함.	
중종 13년 (1518) 9월 15일	함경도 敬差官 유용근의 狀啓.		그 해 삼수·감산 초피 공납 감함.
중종 35년 (1540) 11월 3일	함경도 절도사 민제인의 평안·함경도지역 초피 공납으로 유량하는 백성들 늘자 軍民 수가 줄어 감면을 청하는 狀啓.	평안·함경도지역 초피 공납 수량 짐작해서 감하도록 상의원 提調와 該司의 堂上에게 전교함.	
선조 25년 (1592) 10월 6일	사간원에서 왜란으로 인해 수비에 시달렸으나 초피 공납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납부한 것을 제외하고 금년 1년을 기한으로 일체 감하기를 청함.	1년을 기한으로 일체 감함.	
명종 19년 (1564) 10월 24일	평안도 관찰사 정종영이 영원군 초피 견감을 청하는 啓本을 보고, 대신들은 조처를 취하거나, 영원군이 잔폐 하더라도 각도의 여러 군현도 마찬가지고 이미 견감의 기한이 다했으니 마땅히 전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불일치함.	국용의 초피가 떨어졌으니 좌·우상의 논의에 따라 시행할 것을 전교함.	

181)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표 7>의 내용을 토대로 여진과 초피 밀무역으로 인한 정부의 초피공납 감면 대책을 정리해 보면, 초피 밀무역으로 인해 발생한 폐단을 上言하거나 감해주길 청할 때마다 공납 감면을 바로 시행했던 것이 아니라, 국가 수요의 상황에 따라 시행하거나 몇 해에 한해서 감면했다.

성종대 함경도 五鎭으로의 초피 공물 분정은 여진과의 밀무역을 부추겼다. 五鎭에서는 생산되지 않았던 초피를 공납하기 위해 여진과의 밀무역으로 수량을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폐단으로 성종 6년(1475) 15년 동안 임시로 면제를 받았다.<sup>182)</sup> 하지만 그 후 기한이 다하여 또다시 여진과 무역이 발생했다. 따라서 성종은 초피를 五鎭에서 갓출 수 있는지, 內地로 옮겨도 가능한지 영구히 감면 여부를 논의했다.<sup>183)</sup> 내지에서도 초피가 생산되긴 했지만 진상하기에 부적합하여 반드시 여진과 무역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호조에서는 五鎭에서 공납하는 수량이 많고 내지로 옮기게 되면 내지 백성이 폐해를 받을 것이며, 백성에게서 값을 거두어 사서 바치게 하는 것도 本土에서 나는 것을 공물로 삼는 뜻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공안에 따라서 상납하게 하고 내지로 옮겨 배정하지 못하게 했다.<sup>184)</sup> 五鎭의 초피공납 영구히 감면 조치는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五鎭에서 생산되지 않았던 초피를 공물로 분정한 것도 역시 본토에서 산출되는 토산물을 부과하는 원칙에서 똑같이 어긋난 상황이었다. 생산되지 않았던 공물이었어도 한번 공안에 상정되면 그만큼 바꾸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에 뜻대로 五鎭의 초피공납을 내지로 옮겼더라도 이미 내지에서도 여진과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었던 여진과의 무역은 불가피했다.

정부는 초피공납으로 인해 우마·철물이 계속해서 여진으로 유출되는 큰 문제를 우려해 수차례 공납 수량을 감면했지만 여전히 공납 문제로 밀무역은 중단되지

182) 『成宗實錄』 卷52, 成宗 6年 2月 18日. 「傳于戶曹曰 永安道六鎭恒貢貂鼠皮 限十五年權除」.

183) 『成宗實錄』 卷225, 成宗 20年 2月 22日. 「傳旨戶曹 永安道五鎭貂皮之貢 去甲午年間 限十五年 蠲減 然永安道內地與平安道皆產貂皮 足支常貢 五鎭之貢永免便否 其議啓」.

184) 『成宗實錄』 卷230, 成宗 20年 7月 1日. 「戶曹據永安道觀察使李封啓本啓 貂皮之貢 多在永安道 五鎭 而已錄于貢案 內地諸邑則貂鼠不多產 若以五鎭所貢 移定于內地 則民必受弊 若收價於民 質換納之 亦非任土作貢之意 請依貢案上納 勿使移定 從之」.

않았다. 이는 감면되어 적은 수량이었더라도 백성들은 여진과 밀무역을 계속 이어가면서 공납했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감면을 반복하기 시작하면서 국용의 수량을 염두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몇 해만 제한해서 감하거나, 성종 22년(1491) 2월에는 국용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 六鎭을 제외한 여러 군현의 초피공납 수량을 감하여주지 않기도 했다. 초피가 국용으로 사용되는 이상 공납 감면을 여러 차례 시도했어도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의 초피공납 감면 정책에서 보여주듯이, 공납제도가 존속하는 한 평안·함경도지역 백성들은 초피 밀무역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반면 정부에서는 백성들의 공납이 있었기에 초피 조달이 가능했다. 즉, 정부는 초피 밀무역을 금지하면서도 이를 통해 국용을 충당하는 모순이 있었다.

초피가 주로 御用에 사용되고, 對明외교관계에서 회증품과 별진헌 품목의 용도로도 사용되는 긴요한 공물이었기에 원활한 공급은 더욱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진과의 밀무역 폐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용의 공급을 공납에 의존하는 현실적 제약에서 감면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초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라도 常貢을 일체 없애지는 못했던 소극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2) 초피복식 착용 금지

유교적 정치이념에는 복식에 대한 법도로 신분질서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관리들의 衣冠제도에 差等이 있었다. 그러나 왕실전용으로 제한을 두었던 초피복식 착용이 사대부와 상인층까지 확대돼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복식 규제를 통해서 사회질서를 통제하려했던 정치이념에 위배되는 현상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또한 초피의 수요층 확대는 단순히 신분질서의 혼란을 보여주는 사치스러운 풍속이었음을 떠나서, 초피 가격을 상승하게 하고 우마·철물이 지속적으로 여진에게 유출되어 여진의 성장을 도와주는 배경이면서도 변방 백성들을 떠돌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邊將들이 초피를 얻기 위해 藩胡까지 침해하여 북방정책의 차질을 빚는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던 것이다.

정부는 초피의 공물을 줄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밀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초피복식 착용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sup>185)</sup> 그 근원을 막아 당상관



이외는 일체 착용을 금지하고 변방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했다.<sup>186)</sup> 다음의 <표8>을 보면 시기 순으로 정부에서 초피복식 착용 금령을 내렸던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8> 15~16세기 초피복식 착용 금령 <sup>87)</sup>

시기	금지 사항
성종 3년(1472) 1월 22일	庶人の 남자와 부인이 초피로 옷을 만들거나 이엄 착용 금지.
성종 6년(1475) 7월 17일	초피는 당상관 이외의 朝使의 의복과 이엄에는 일체 금지. 당상관의 아내 이외의 衣冠에도 금한다는 전지를 내림.
중종 2년(1507) 5월 25일	婦女가 범법한 초피를 고발한 사람에게 주는 제도는 좋은 풍습이 아니니 시행하지 말자는 대간의 청을 윤희함.
중종 4년(1509) 11월 10일	성균관 및 사학 유생의 초피 이엄 착용에 대해 사관 및 해당 관청에서 검찰을 하도록 전교함.
중종 8년(1513) 2월 6일	서인들이 초피를 입어 귀천의 차등이 혼동되고 존비의 차서가 없어져 풍속이 퇴폐해졌음을 지적함. 분수를 넘지 말고 절약과 검소의 실천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언문으로 번역한 전지를 내림.
중종 9년(1514) 10월 21일	三殿이외에 貂服과 이엄을 금지.
중종 11년(1516) 11월 5일	초피이엄 외에는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착용 금지.
중종 23년(1528) 4월 21일	초피복식 착용을 法司가 규찰해야 하고 사대부들의 아내에게는 일체 금단할 수 없지만 서민들에게는 마땅히 엄하게 금할 것.
중종 29년(1534) 10월 18일	雜官이나 三醫司라도 紗帽를 착용했다면 초피 착용을 금지할 필요는 없음. 지방도 한양처럼 법사가 규찰할 것.
명종 12년(1557) 1월 21일	초피복식 착용에 대해 법사가 규찰 할 것.

<표 8>을 보면 지속적으로 금령을 내리고 法司인 한성부와 형조에서 규찰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당초 세종대에 초피복식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경국대전 의 이엄 제도에도 초피 착용 제한을 정3품 당상관까지 정했다. 그러나 이미 법

185) 『成宗實錄』 卷57, 成宗 6年 7月 14日. 「輕啓曰 臣聞諸有沼 興利人貿易貂鼠皮 北方鉅弊 國家雖減貂鼠皮之貢 而弊猶不祛者 俗尙奢侈 服飾必用貂鼠皮」.

186) 『中宗實錄』 卷29, 中宗 12年 9月 22日. 「與野人爭相質買 以我有用 易彼無用 此六鎮深患 而貂皮爲甚 國家設法禁之 任方面者 每加糾摘 禁之愈嚴 而犯之愈多 其故何哉 臣聞 欲去弊者 先塞其源 導其源而能遏其流者 未之有也 俗尙侈靡 競貴異物 此所由致弊之源 而其爲質買 特其流耳」; 『中宗實錄』 卷21, 中宗 9年 10月 21日. 「傳曰 三殿外勿用貂服事 所以禁奢侈紓民病 似可施行…」.

187)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층이 확대되면서 금령을 재차 반복했던 것이다. 종종 재위시기에 잦았던 금령 횡수는 연산군대의 초피 남용 영향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이미 만연했음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초피복식 착용을 다스리는 과조를 엄히 세우고, 궁중에서부터 시작해서 간소한 풍속과 검약이 행해지기를 당부하는 전지를 온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언문으로 번역하여 내리기도 했다.<sup>188)</sup> 그러나 法司에서 사람들을 단속하고 규찰을 했지만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피복식 착용은 그치지 않았다. 法司의 관원이 일일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下吏를 시켜 금지했으나, 下吏와 금란하는 자가 符同하여 흔히 뇌물을 주며 죄를 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종종은 이러한 폐단 역시 바로잡아야 할 것을 비판했다.<sup>189)</sup>

하지만 종종 23년(1528) 서민들에게는 마땅히 금지해야하지만 사대부의 아내에게는 일체 금단할 수 없으며, 종종 29년(1534) 雜官이나 三醫司라도 紗帽를 착용했으면 초피복식 착용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sup>190)</sup> 이는 당상관 이외의 관리와 사대부 부녀들에 대해서 금령이 완화된 것을 보여준다. 종종은 이미 성행하게 된 사람들의 풍속을 단번에 바꾸기가 결코 쉽지 않고, 아무리 법금을 제정하더라도 무익할듯하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sup>191)</sup> 뇌물을 이용한 下吏와의 유대관계도 얽혀 있어 이미 성행한 사람들의 풍속을 쉽게 법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정부에서는 초피복식 금령을 누차 강조하며 수요층의 확대를 막고, 수요가 줄어들어 여진과 초피 밀무역이 근절되기를 시도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선조대에도 초피를 여염의 천민까지 사용하고 있어<sup>192)</sup>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

188) 『成宗實錄』 卷57, 成宗 6年 7月 17日. 「承政院草禁奢僭 傳旨曰…貂鼠皮 堂上官外朝士衣服耳掩一禁 堂上官妻外衣冠亦禁」; 『中宗實錄』 卷17, 中宗 8年 2月 6日. 「教政府曰…商賈之婦 服美于人 公然被貂 貴賤混等 尊卑失序 驕淫矜誇 而風化頹靡 如是而欲使民家給人足 蓋亦難矣…意者予訓迪之方 尚有未盡歟 咨爾公卿大夫庶士百姓里居 其各率由典常 罔敢踰分 惟務節儉 以共享禮教之中 豈不嘉哉 其申諭中外 以知予崇儉節用之意 并與成宗朝傳旨 譯以諺文 使婦人小子 無不周知」.

189) 『中宗實錄』 卷64, 中宗 23年 12月 18日. 「上曰 所言至當 近者閭閻之事 未之知也 大概奢侈成風 侵禮犯分 法司非不糾察也 然法司官員 不可目覩檢舉 不得已令下吏禁之 下吏與禁亂者符同 窮困迷劣者 無所賄賂而受罪 實爲僭濫者 多以賄賂而獲免 雖欲一切禁斷 此弊已久 徒爲下吏之用術而已 不得已先矯此弊可也」.

190) 『中宗實錄』 卷61, 中宗 23年 4月 21日. 上顧問李嘯曰 貂皮 士大夫之妻 不可一切禁之也 細民則所當嚴禁; 『中宗實錄』 卷78, 中宗 29年 10月 18日. 「上曰 雖雜類三醫司 若着紗帽 則鼠皮不須禁也」.

191) 『中宗實錄』 卷21, 中宗 9年 10月 21日. 「傳曰 三殿外勿用貂服事 所以禁奢侈紓民病 似可施行 然徒禁貂服 而不禁耳掩 則北方守令 必有取來者 貂服 率皆婦女所着 着在閨中 其能禁乎 舊俗不可卒變 雖立法禁 恐無益也」.

었다. 금령을 지속적으로 내렸던 현실은 정부의 금령이 유명무실했다는 의미이며 오히려 잘 지켜지지 않았던 실상을 반증하는 것이다.

### 3) 초피 밀무역 금지

정부는 평안·함경도지역에서 여진과 초피 밀무역도 금지했다. 언급했듯이 국초부터 평안·함경도지역에서 초피의 潛賣는 금지된 사항이었다. 초피를 무역하기 위해 사용했던 철물은 국초 태종대에 경성·경원에 貿易所를 설치하여 여진과 互市를 개설해 교역하도록 했었다. 여진의 출입을 일절 금하면 邊境지역의 혼란을 염려했던 것이다. 회유책으로 조선의 鹽·水鐵만 허용해주면서 철물의 다량 유출을 피하고 변방의 불화를 막고자 했다.<sup>193)</sup> 하지만 철물의 허용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다. 농기나 군기제조와도 밀접했던 자원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엄하게 금지했다.<sup>194)</sup> 이처럼 법이 엄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초피를 얻기 위해 우마·철물로 교환이 성행하자 정부에서는 여진과의 초피 밀무역을 더욱 금지할 수밖에 없었다.

③ 초서피 등의 물건을 양계에서 교역하는 사람은 杖刑 1백대를 집행하고 변방의 먼 곳에 充軍하며, 있는 곳의 수령도 또한 制書有違律로 논죄하여 파직시키고 敍用하지 않는다.<sup>195)</sup>

③ 무릇 수령이 탐오하고 청렴한 것과 商賈가 가고 오는 것을 알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또 절도사가 항상 여러 鎭을 순행 돌고 있으므로 진실로 마음만 쓴다면 무엇이 금지시키지 못하겠습니까. 그 行商이 彼人과 교역하는 문제는 진작부터 금령이 있으니 검찰 여하에 달렸을 뿐입니다. …근년에 興利하는 무리들이 많은 물화를 싸가지고 北鎭을 두루 다니면서 철물과 우마를 사들여서 오랑캐들의 皮物과 바꾸

192) 『宣祖實錄』卷135, 宣祖 34年 3月 17日. 貂皮我國不產 而閭閻下賤 無不戴貂 故貂價四五倍於平日矣.

193) 『太宗實錄』卷11, 太宗 6年 5月 10日. 「命置貿易所於鏡城慶源東北面 都巡問使朴信上言 鏡城慶源地面 不禁出入 則或有闌出之患 一於禁絕 則野人以不得鹽鐵 或生邊隙 乞於二郡置貿易所 令人得來互市 從之 唯鐵則只通水鐵」.

194) 『世宗實錄』卷59, 世宗 15年 3月 22日. 「兵曹啓 平安咸吉道 地連彼境 故鐵物買賣 已曾立法防禁 然無識之徒 意謂防禁疎闊 如前買賣者 間或有之 自今以後 兩道居民如炊飯鐵器農器兵器等鐵物 與彼人買賣者及知情故放者 以違禁下海律科罪 有能捕告者 依此律文充賞 野人京中來往所經各官各驛及京中入接館中 皆定禁亂 嚴加糾察 從之」; 『世祖實錄』卷31, 世祖 9年 8月 8日. 「諭咸吉道都節制使康純曰 將鑰鐵器及水鐵農器 與野人互市者已令嚴禁 比聞無識之徒不畏邦憲 潛輸買賣者有之 專是慢法弛禁之所致也 卿其更加痛禁 推鞠以啓」.

195) 『成宗實錄』卷57, 成宗 6年 7月 17日. 「貂鼠皮等物兩界交市者 決杖一百 邊遠充軍 所在守令亦論以制書有違律 罷職不敍」.

어 오는 모양이오니 청컨대 수시로 御史를 뽑아 보내서 사찰을 강화하도록 하옵소서하니, 극균의 의논을 따랐다.<sup>196)</sup>

㉔ 소를 야인과 皮物로 바꾸는 것은 아주 불가하니 앞으로는 엄하게 금할 것을 관찰사에게 下諭하라 하자, 政院이 아뢰기를, 만약 관찰사로 하여금 금지하게 하면 한때의 습으로는 반드시 쌓인 폐단을 갑자기 고칠 수 없을 것이니, 대신에게 수의 하여 법금을 엄히 세움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sup>197)</sup>

사료 ㉔에서 평안·함경도지역에서 초피를 교역하는 사람은 장형 1백대를 집행하고 변방의 먼 곳으로 군역에 복무하게 할 것이며, 그 곳의 수령 또한 임금의 명령을 어긴 행위로 논죄 후 파직시키고 다시 등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료 ㉕에서는 상인들의 밀무역 활동에 대해서 수시로 御使를 뽑아서 사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미 국초부터 평안·함경도지역에 상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行狀없이 엄하게 금지했으며, 地方官에서 행상의 활동을 규찰할 때 행장에 명기된 나이·용모·수효를 파악하도록 규정했었다.<sup>198)</sup> 상인이 여진과 교역하는 것은 이미 금령이 있으니 검찰여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료 ㉖에서 여진과 皮物을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관찰사에게 단속하게 하더라도 한때의 명령으로는 쌓인 폐단을 고치기 힘들 것이라 여겨 법금을 엄히 세웠다.

그러나 정부는 부상대고의 상업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국초부터 평안·함경도지역의 출입을 제한하였지만, 그들은 納穀과 같은 정부의 재정운영제도를 활용하며 평안·함경도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또한 수령과 관인들의 주도하에서도 초피 밀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때문에 권력을 이용한 초피의 불법적인 축재와

196) 『燕山君日記』 卷29, 燕山君 4年 4月 21日. 「凡守令貪廉 商賈往來 靡不知之 且節度使常巡諸鎮 苟能用心 何禁不止 其行商與彼人交市 夙有禁令 在檢察之何如耳…近年興利之徒多齎物貨 周行北鎮 貿鐵物牛馬 以市虜人皮物 請無時揀遣御史糾察 從克均議」.

197) 『中宗實錄』 卷6, 中宗 3年 8月 16日. 「牛則與野人貿易皮物 至爲不可 今後痛禁事 下諭于觀察使 政院啓曰 若令觀察使禁止 則一時之令 必不能遽革積累之弊 收議大臣 嚴立法禁何如 傳曰 可」.

198) 『太宗實錄』 卷14, 太宗 7年 9月 27日. 「東北面都巡問使李稷啓 禁靑州以北無公引人物往來 從之 啓曰…又令各處興利人 毋得入磨天嶺以北 著爲禁令」; 『太宗實錄』 卷14, 太宗 7年 10月 9日. 「政府議得 東西北面 境連彼土 其面入歸行商者 京中漢城府外方都觀察使都巡問使 印信行狀成給 無行狀者 一依啓本痛禁…上皆從政府擬議」; 『世宗實錄』 卷89, 世宗 22年 5月 9日. 「自今令漢城府 京外行商 錄名于籍 月稅及文引稅之數 參酌更定 於四季月詳加考察收納 輸送濟用監 外方守令 亦依此例施行 商賈到處各官 考其漢城府文引 參驗年歲容貌名數去處日限 如有違者 移文法司 依律施行 以爲恒或」; 박평식, 앞의 책, 2009, 163쪽.

부정부패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국내의 끊임없는 초피 수요로 막대한 이익이 제공되는 한, 부상대고와 관인들의 밀무역은 더욱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고 쉽게 중단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정부의 규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문제로 작용했다.

한편, 정부는 毛物무역으로 이익을 보려는 자들이 연산군대에 더욱 많았는데 이를 갑자기 금지하면 여진과 마찰이 생길 것으로 여겨 監司로 하여금 상황을 보면서 금지하자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sup>199)</sup> 또한 평안도 만포진에서 여진과의 우마·철물 교역금지로 인해 여진에서 매매를 요구하고 원망할 것을 염려하여 鎭將에게 그들을 회유하여 보낼 것을 당부했다.<sup>200)</sup> 즉, 초피 밀무역을 금지하면서도 한편으론 여진과의 충돌을 염려했다. 對女眞정책에서 강경책만 고수할 수 없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정부의 여진에 대한 회유책 아래에서는 밀무역 금지를 쉽게 단행할 수만도 없었던 것이다.

초피 밀무역은 조선과 여진의 양측이 원했던 것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성행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에서는 중앙정부의 초피 수요와 그 외 대부분의 초피 수요가 결국 밀무역을 통해 여진에게 의존하고 있던 현실이었다.

당시 초피 밀무역은 정부의 공급제도 한계와 국내의 초피 수요증가가 만들어 낸 결과였다. 또한 정부의 상업에 대한 ‘務本抑末策’과 통제 속에서도 부상대고의 활동으로 초피의 유통경로가 더 이상 함부로 매매할 수 없는 금물이 아닌 밀무역과 사무역으로 확대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교환경제가 점차적으로 정부의 통제아래 둘 수 없는 수준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들은 후일 대동법시행 배경과 조선후기 유통경제의 기반을 열어준 하나의 계기도 되겠다.

199) 『中宗實錄』 卷10, 中宗 5年 1月 23日. 「今國人利於貿易毛物 盡賣牛畜 或以此易彼之所得中原綾段 至廢朝尤甚 然猝禁則夷虜生嫌 令監司因便禁止可也」.

200) 『中宗實錄』 卷12, 中宗 5年 9月 24日. 「滿浦互市 在所痛禁 若因循不禁 本道牛馬鐵物 終皆爲野人之資 其弊不可勝言 以前前日 已議一切禁斷 依前議嚴禁爲當 野人若要買賣 留連不歸 且有怨言 令鎭將開諭曰 凡物隨時貴賤 價亦從而低昂 乘時射利 小民之事也 前日如毛皮毳子等物 有切於用 故民間就爾等求買 今則不切於用 自無求買者 大抵買賣 各從情願 不可抑使爲之也 以此反覆開諭 入送爲便 從之」.

## V. 결론

조선시대에 초피는 왕실전용으로 사용했고 희소성을 가진 귀한 가죽이었다. 다른 모피에 비해 화려하고 부드러웠을 뿐만 아니라 방한의 용도로도 충분했던 최고급모피였다. 주로 御用이나 冠服의 재료에 활용하여 왕실과 정3품 당상관 이상만 착용할 수 있었다. 초피에 대한 『경국대전』의 규정은 복식착용을 통해 사회 질서를 통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초피는 권위와 신분을 상징했던 衣料였다. 중앙정부에서는 초피를 안정적인 對明외교관계를 유지하고 포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공·회증·하사품으로 활용했다.

정부는 국용의 초피를 대부분 공납으로 조달했다. 평안·함경도지역에서만 공납했던 제한된 산지의 여건으로 인해 많은 양을 얻을 수 없어 안정적인 확보를 시도했다. 하지만 초피공납은 결코 순조롭지 못했다. 산지에서 생산되더라도 물량을 충당하기가 어려웠으며, 진상하기에는 모피의 품질이 좋지 못했다. 또한 정부는 국용을 위해 초피가 생산되지 않았던 함경도 六鎭을 비롯한 다른 지역까지 공물을 분정했다. 따라서 백성들은 초피를 산지나 도성에서 質納하는 해결방법을 모색했고 방납의 폐단과 수령의 주구에도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여진과 초피 밀무역의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에 이르면 조정 및 사대부가의 부녀사이에서 초피복식 착용이 성행하면서 수요층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우선 초피의 수요가 상류층에서부터 확대될 수 있었던 요인은 초피가 가진 미적 가치와 장식적 위세품으로 인식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16세기의 소빙기 기후적 상황을 꼽을 수 있다. 사료를 통해 초피 수요에 대한 상황이 계절의 구분 없이 사계절 내내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소빙기의 기후가 초피의 수요 확대를 가져온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공급처 역할을 했던 여진도 있었기에 조선의 초피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고, 당시 교환경제를 주도했던 富商大賈의 활발한 상

업 활동도 초피 수요층의 확대를 가능하게 했다.

당시의 공납실상과 수요층 확대는 여진과의 밀무역 성행을 전개했다. 그 대가로 牛馬·鐵物을 교환할 정도로 초피의 가치가 더욱 상승했다.

초피 밀무역으로 조선에서는 우마·철물이 지속적으로 여진에게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마·철물의 유출은 농업을 장려하고 군사확보에 항시 관심을 기울였던 정부의 노력과 달리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초피 공납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던 평안·함경도지역 백성들이 유량을 선택하면서 軍民수가 줄어 국경지역의 防備에 커다란 문제를 가져왔다. 그리고 邊將들이 초피를 얻기 위해 藩胡까지 침해하여 북방정책에 차질을 빚는 상황도 발생했다. 단순히 방한복의 衣料로만 생각했던 초피가 가져온 파장은 당시 커다란 사회문제로 번졌던 것이다. 초피 밀무역을 통해서 여진은 경제·군사적 성장의 실리를 추구한 반면, 조선에서는 중요한 자원이 유출되고 여러 폐단이 발생했으며 한편으론 여진의 성장을 돕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에서는 초피 밀무역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차례 초피공납을 감면시켜주는 정책을 실시하거나, 초피복식 착용 금령을 내려 수요층의 확대를 막고자 했다. 또한 초피 밀무역을 금지하는 법금을 엄히 세워 대응을 시도했다. 이러한 대응책들의 반복적인 시행은, 반대로 밀무역을 전적으로 금지하지 못했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초피가 주로 御用과 對明외교관계에서 회증·조공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요한 공물이었기에 원활한 공급은 더욱 중요한 문제였다. 정부는 여진과의 밀무역 폐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용의 공급을 공납에 의존하는 현실적 제약에서 공납 감면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초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라도 常貢을 일체 없애지는 못했던 소극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정부는 초피 밀무역을 금지하면서도 또한 밀무역을 통해 국용을 충당했던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초피 밀무역에 관한 부상대고의 상업 활동을 단속하고 국초부터 평안·함경도지역의 출입을 제한했었다. 그러나 상인들은 納穀과 같은 정부의 재정운영 제도를 활용하여 평안·함경도지역에서 상업 활동이 가능했다. 그리고 초피 밀무역은 수령과 관인들도 함께 주도했기에 권력을 이용한 초피의 불법적인 축재와

부정부패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국내의 끊임없는 초피 수요로 막대한 이익이 제공되는 한, 부상대고와 관인들의 밀무역은 더욱 활성화 될 수밖에 없었으며 쉽게 중단될 수 없었다. 또한 정부는 초피 밀무역을 금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진과의 충돌을 염려하여 일관되게 밀무역 금지를 시행하지만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정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었던 이유와 한계를 보여준다. 이미 조선에서는 초피 공납을 통한 중앙정부의 수요와 그 외 대부분의 초피 수요가 여진과의 밀무역으로 충당되는 실정을 받아들이는 현실이었다.

초피 밀무역은 정부의 공납제도 한계와 국내의 초피 수요증가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상업에 대한 ‘務本抑末策’과 통제 속에서도 상품유통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리고 상인들의 상업 활동을 통해 초피의 유통 경로가 민간의 사무역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었던 사회경제적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후일 대동법시행 배경과 조선후기의 상업발달을 촉진시켜줄 수 있었고 유통경제의 기반을 열어준 하나의 계기도 될 것이다.

초피 수요층의 확대에 의한 민간 유통실태는 사료의 부족으로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사료가 있어 보완된다면 조선전기 초피와 관련된 사회경제에 관한 부분이 더욱 명확하게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조선전기 초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에 주목하여 밀무역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조선사회에 끼쳤던 영향을 살펴보는 데 의미를 두었다. 그리고 초피를 통해서 조선전기 사회·경제·문화의 여러 단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 초피에 관한 조선후기로의 전개도 추후 기회가 된다면 연구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사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經國大典』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翻譯)『老乞大』  
『老乞大諺解』  
『重刊老乞大諺解』  
『譯語類解』  
『雅言覺非』  
『林園十六志』

### 2. 연구논저

#### 1) 단행본

김동욱,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史, 1973.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 도서출판 미술문화, 1999.  
김한규,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2004.  
박도식, 『朝鮮前期 貢納制 研究』, 혜안출판사, 2011.  
박평식, 『조선전기 교환경제와 상인연구』, 지식산업사, 2009.  
송방송, 『악학궤범용어총람』, 도서출판보고사, 2010.  
심연옥, 『중국의 역대직물』, 한림원, 1998.  
王維堤, 『중국의 옷 문화』, 에디터출판사, 2005.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7.  
 유희경·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81.  
 이민주, 『조선의 왕실복식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일지사, 1988.  
 주신·고춘명, 『중국의관복식대사전』, 상해사서출판사, 1996.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3』, 역사비평사, 2006.  
 한국고전용어사전편찬회, 『한국고전용어사전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 2) 연구논문

강순제·김은정, 「문헌을 통해 본 조선시대 방한모 명칭에 관한 연구」, 『복식』 제58권 7호, 한국복식학회, 2008.  
 구도영, 「조선 초기 對明貿易體制의 성립과 운영」, 『史學研究』 제109호, 한국사학회, 2013.  
 김구진, 「조선시대 女眞에 대한 정책」, 『백산학보』 제88호, 2010.  
 김동욱, 「李朝 初의 服飾 禁制」, 『논문집』 7권 1호, 중앙대학교, 1962.  
 김순남, 「16세기 조선과 野人사이의 모피 교역 전개」, 『한국사연구』 제152권, 한국사연구회, 2011.  
 \_\_\_\_\_, 「15세기 중반~16세기 조선 북방 軍役의 계단과 軍額감소」, 『조선시대 사학보』 제16권, 2012.  
 김연옥, 「歷史속의 小氷期」, 『역사학보』 제149권, 역사학회, 1996.  
 김진구, 「朴通事 諺解의 服飾研究」, 『복식문화연구』 제8권 3호, 복식문화학회, 2000.  
 김진봉, 「朝鮮初期의 貢物代納制」, 『史學研究』 제22호, 한국사학회, 1973.  
 \_\_\_\_\_, 「朝鮮前期의 貢物防納에 대하여」, 『史學研究』 제26호, 한국사학회, 1975.  
 남도영, 「馬政」, 『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2003.  
 남미혜, 「15·16세기 服飾奢侈의 유행과 국가의 대응책-紗羅綾緞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27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00.  
 남지대, 「15세기 조선사회와 농민」, 『역사와 현실』 제5권, 한국역사연구회, 1991.  
 남의현, 「多元的 經濟構造를 통해 본 女眞社會의 特徵-15~17세기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35권, 2012.

- 민길자, 「朝鮮時代の 皮·毛物에 대한 研究」, 『교육논총』 제11권,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1992.
- 박도식, 「조선전기 공납제의 특징」, 『인문학연구』 제13호, 2009.
- 백승철, 「16세기 부상대고의 성장과 상업활동」, 『역사와 현실』 제13권, 한국역사연구회, 1994.
- 서병국, 「조선전기 대여진관계사」, 『한국사연구논총』, 한미문화사, 2008.
- 소순규, 「『世宗實錄地理志』를 통해 본 朝鮮初 貢物 分定의 실제와 특성-厥貢·土貢·土産 항목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제161권, 2013.
- \_\_\_\_\_, 『新增東國輿地勝覽』 토산 항목의 구성과 특징, 『東方學志』 제165집, 2014.
- 송수환, 「조선전기의 尙衣院」, 『경희사학』 제21호, 경희대학교사학회, 1997.
- 원유한, 「무역」, 『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2003.
- 이선재, 「朝鮮時代 服飾禁制의 動因과 樣相에 關한 研究」, 『논문집』 제30권, 숙명여자대학교, 1990.
- 이재룡, 「국가재정」, 『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2003.
- 이정수, 「조선전기의 물가변동-미곡 이외의 상품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제68집, 국사편찬위원회, 1996.
- 이태진, 「小氷期(1500-1750)의 天體 現象的 原因-『朝鮮王朝實錄』의 관련 기록 분석-」, 『國史館論叢』 제72집, 1996.
- \_\_\_\_\_, 「16세기 국제교역의 발달과 서울 상업의 성쇠」, 『서울상업사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8.
- \_\_\_\_\_, 「16·17세기 장기 자연재난과 봉당정치에 전개」,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 이혜옥, 「조선전기 수공업체제의 정비」, 『역사와 현실』 제33호, 한국역사연구회, 1999.
- 이호철, 「농업과 농업기술」, 『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2003.
- 전영준, 「조선전기 別瓦窯의 설치와 財政 運營」, 『장서각』 제31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 제금련 외 3, 「沈香」, 『경희학대논문집』 제30권, 경희대학교동서약학연구소, 2002.
- 최경순, 「朝鮮朝 毛皮 奢侈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16권 1호, 경일대학교, 1999.

한상권, 「16세기 대중국 사무역의 전개 - 은무역을 중심으로-」, 『김철준박사회  
갑기념사학논총』, 1983.

한성주, 「조선의 對女眞관계와 6鎭지역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 제49집, 한일  
관계사학회, 2014.

### 3) 학위논문 및 기타

박성실, 『朝鮮前期出土服飾研究-壬辰倭亂 以前 時期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박순지, 『韓國의 毛織物과 皮物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1996.

우동걸, 『한반도 산림에 서식하는 담비의 생태특성과 보전방안』, 서울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정복남, 『裘에 關한 研究-우리나라와 中國을 中心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김성희, 「조선시대 방한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윤순, 「14~17세기 女眞經濟의 구조와 後金の 건국」,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13.

박경자,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成宗代에서 顯宗代의 복식금제 연구」, 단  
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서정원, 「『老乞大』간본들을 통해 본 14~18세기 복식관련 용어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안보연, 「우리나라 모피 피혁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5.

이충선, 「朝鮮前期 官營手工業 體制의 再建과 運營」,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11.

하정미, 「조선후기 대일관계 속의 皮物」,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www.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두산백과